

政策資料 2003-02

食品營養從事者の 健康診斷 實施 規制에 관한
規制順應度 調査

鄭基惠

尹시문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韓國食品工業協會

政策資料 2003-02

食品營養從事者の 健康診斷 實施 規制에 관한
規制順應度 調査

鄭基惠

尹시문

韓國保健社會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目次

要約	9
第1章 序論	21
第1節 研究 必要性 및 背景	21
第2節 研究 目的	23
第3節 研究 對象 및 方法	24
1. 調査 對象	25
2. 研究 內容 및 方法	26
3. 分析 方法	28
第2章 規制順應에 관한 理論的 考察	29
第1節 規制順應	29
1. 規制順應의 擡頭 背景 및 概念	29
2. 規制順應의 一般的 模型	33
3. 規制順應의 決定要因	35
4. 規制順應 向上을 위한 一般的 原則	42
5. 規制順應의 確保와 規制의 質 提高方案	44

第2節 規制順應度	46
1. 規制順應度 調査指針	46
2. 規制順應度 調査設計	49
3. 2003年 規制順應度 調査	50
第3章 根據法令 與 關聯 現況	54
第1節 規制順應度 調査關聯 根據法令	54
第2節 健康診斷實施 根據法令(食品衛生法)	58
第4章 規制順應度 調査結果	62
第1節 調査概要	62
第2節 調査結果 要約	63
第3節 規制順應度 調査結果	68
1. 被規制集團(業主 與 從事者) 調査結果	68
2. 規制執行者(公務員) 調査結果	76
3. 第3次 集團(一般國民, 消費者) 調査結果	84
第4節 規制順應度 比較分析	90
1. 規制認識度	90
2. 規制認定度	92
3. 規制遵守度	93

第5章 規制順應度 提高方案	95
1. 規制認識度	95
2. 規制認定度	95
3. 規制遵守度	96
参考文献	97
附 錄	101

표 목 차

〈표 1- 1〉 조사대상 선정	25
〈표 2- 1〉 규제순응의 결정요인	36
〈표 2- 2〉 규제순응 향상을 위한 일반적 원칙	43
〈표 2- 3〉 규제순응도 조사설계	52
〈표 3- 1〉 과태료 관련 조항 제정(1994년 12월 31일)	60
〈표 3- 2〉 과태료 관련 조항 개정변경 현황	61
〈표 4- 1〉 조사결과 총괄	63
〈표 4- 2〉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요약(1)	66
〈표 4- 2〉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요약(2)	67
〈표 4- 3〉 피규제집단 일반적 현황	68
〈표 4- 4〉 피규제집단 조사대상별 현황	69
〈표 4- 5〉 피규제집단 조사대상별 업종 현황	70
〈표 4- 6〉 피규제집단 조사업종별 응답대상 현황	70
〈표 4- 7〉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72
〈표 4- 8〉 피규제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74
〈표 4- 9〉 피규제집단 규제준수도 조사결과	76
〈표 4-10〉 규제집행자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77
〈표 4-11〉 규제집행자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79
〈표 4-12〉 규제집행자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81
〈표 4-13〉 규제집행자 규제준수도 조사결과	83

〈표 4-14〉 제3차 집단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85
〈표 4-15〉 제3차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86
〈표 4-16〉 제3차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88
〈표 4-17〉 제3차집단 규제준수도 조사결과	90

그림목차

[그림 1- 1] 분석 틀	23
[그림 1- 2] 규제순응도 조사 개요	24
[그림 1- 3] 전산처리 과정	28
[그림 2- 1] 규제순응의 일반적 모형	33
[그림 2- 2] 규제순응의 순차적 접근모형	45
[그림 2- 3] 규제순응 관리 흐름 개요	49
[그림 4- 1]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62
[그림 4- 2] 규제인식도 비교	91
[그림 4- 3] 규제인식도 결과분석 비교	91
[그림 4- 4] 규제 인정도 비교	92
[그림 4- 5] 규제 인정도 결과분석 비교	93
[그림 4- 6] 규제 준수율 비교	93
[그림 4- 7] 규제 순응도 비교분석	94

부표목차

〈부표 4-1〉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대상별)	166
〈부표 4-2〉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업종별)	167
〈부표 4-3〉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세부업종별)	168
〈부표 4-4〉	피규제집단의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169
〈부표 4-5〉	피규제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업종별)	170
〈부표 4-6〉	피규제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세부업종별)	171
〈부표 4-7〉	피규제집단 규제준수율 조사결과(대상별)	172
〈부표 4-8〉	피규제집단 규제준수율 조사결과(업종별)	173
〈부표 4-9〉	피규제집단 규제준수율 조사결과(세부업종별)	174

要約

1. 研究 必要性 및 背景

- 행정규제의 현장 실효성 부재
-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의 집행의지 감소
- 국민과 관련업체의 편익 및 공익의 증대
- 일률적인 건강진단규정의 문제점 파악
- 관련업체의 불만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현실성 있는 규제순응 관리대책 마련

2. 研究 目的

- 규제 존재여부에 대한 인지도,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 규제내용의 명확성 등에 관한 규제 인식도 조사
-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내용)의 적정성, 규제의 목적부합성 등에 관한 규제 인정도 조사
- 규제준수율, 규제준수 감시가능여부, 벌칙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한 규제 준수도 조사
- 과학적인 규제순응제고 방안 마련과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3. 研究 對象 및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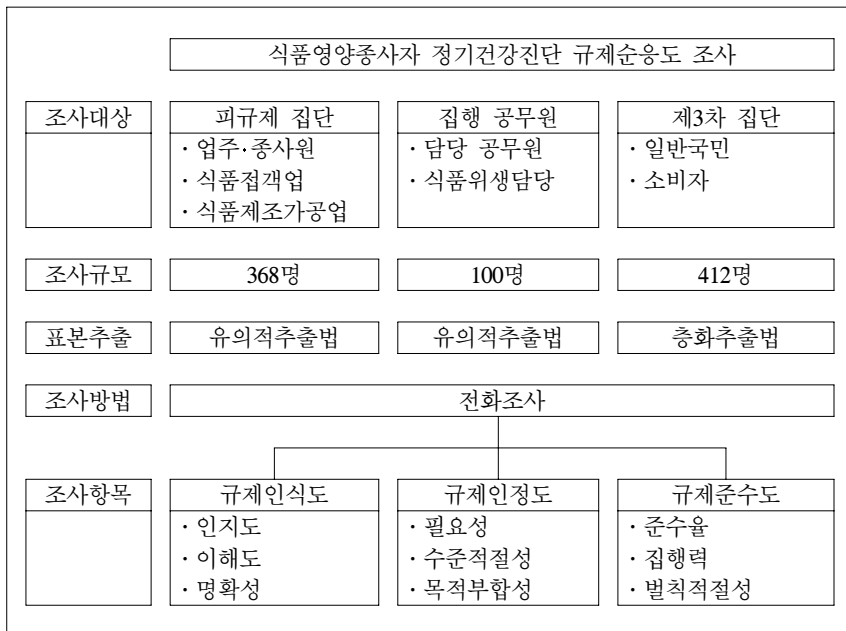
□ 연구대상

- 피규제집단(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업주 및 종사자)
- 집행공무원(식품위생담당 공무원)
- 제3차집단(일반국민, 소비자)

□ 연구방법

- 자료 및 문헌고찰
- 관련전문가 회의개최
- 규제순응도 조사실시 [그림 1]에 조사개요 제시

[그림 1] 규제순응도 조사 개요



□ 분석방법

- 표본선정: 층화추출법 및 유의적추출법 사용
-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 package를 이용한 단순빈도 및 특성분석

4. 根據 法令

□ 행정규제

- 행정규제는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이다. 즉,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함.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제26조 (건강진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26조 (건강진단)

- 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 식품위생법 제78조 (과태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p>제78조 (과태료)</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5.12.29, 2000.1.12, 2002.8.26></p> <p>1. 제3조,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4조 (건강진단 대상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p>제34조 (건강진단 대상자)</p> <p>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2003.8.18></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 건강진단 규제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액 부과 근거조항의 연혁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1> 과태료 관련 조항 개정변경 현황

구분	위반사항	과태료액
1994년 12월 31일 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0만원
1996년 10월 14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종업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30만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및 영업자(종업원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10만원
1999년 11월 13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20만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2003년 4월 22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20만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5. 規制順應度 調査 結果

□ 총평

- 전체적으로 규제 인식도, 인정도, 준수도가 모두 높게 조사되어 현 수준의 규제 준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실제 규제 준수도의 진위여부에 관한 심층 조사와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인지도는 83.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제3차집단인 일반국민들의 인지도는 38.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규제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의 인지도는 58.4%로 집행공무원의 98.0%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준수율은 피규제집단의 경험상으로 볼 때 97.8%가 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율을 공무원은 83.0%, 일반국민들은 45.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규제준수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피규제집단의 92.8%, 집행공무원의 91.0% 그리고 제3차집단의 95.7%가 규제자체의 필요성에 찬성을 하였으며 실질적인 정기건강진단의 기간 및 검사항목 등에 관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대상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식품안전관리상의 위해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목적의 부합성에 관하여 피규제집단의 80.0%, 집행공무원의 81.0%, 일반국민의 76.3%가 부합한다고 응답하였고, 미 준수시 별칙규정에 관해서는 현재 별칙규정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피규제집단의 58.4%, 집행공무원의 56.0%로 나타나 『식품영양종사자 정기건강검진실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세부항목별 평가

가. 규제인식도

규제인지도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2> 규제 인식도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응답내용	피규제집단 (N=368)	집행공무원 (N=100)	제3차 집단 (N=412)
인지도 (의무규정)	·인지	83.7	-	38.8
	·비인지	16.3	-	61.2
인지도 (처벌규정)	·인지	58.4	98.0	32.5
	·비인지	41.6	2.0	67.5
이해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있음	19.8 80.5	79.0 100.0	3.8 41.3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고있음	60.7 ↓	21.0 ↓	37.5 ↓
	·말만 들어본 정도	19.5	-	58.8
내용 명확성	·매우 명확	15.0 82.3	30.0 81.0	-
	·대체로 명확한 편	67.3 ↓	51.0 ↓	-
	·별로 명확하지않은 편	17.0 17.7	19.0 19.0	-
	·전혀 명확하지않음	0.7 ↓	-	-

- 식품영양종사자가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피규제 집단의 83.7%, 제3차 집단의 38.8%로 조사되어, 제3차 집단의 규제인지도가 피규제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음.

- 제3차 집단의 규제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대상규제가 식품관련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 국민적 관심사라기보다는 관련대상자에만 한정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규제인지도가 반드시 높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식품영양종사자가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피규제집단 58.4%, 제3차집단 32.5%로 조사되어, 피규제집단의 경우에 규제자체의 인지도에 비해 규제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의 인지도가 더 낮게 조사되었음.
- 피규제집단의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실제로 관련 대상자들이 규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납부경험이 없어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업주, 종사자들의 인식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규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규제내용의 이해도를 질문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피규제집단이 19.8%, 제3차집단이 3.8%로 조사되어 높은 규제인지도에 비해 이해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실제로 규제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음.
-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의 82.3%가 ‘명확하다’고 응답하였고 집행공무원 역시 81.0%가 ‘명확하다’고 응답해 규제의 명확성이 조사대상집단에서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음.

나. 규제인정도

규제 인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음.

<표 3> 규제 인정도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응답내용	피규제집단 (N=368)	집행공무원 (N=100)	제3차 집단 (N=412)
필요성	·반드시 필요	58.1 ~ 92.8	59.0 ~ 91.0	66.3 ~ 95.7
	·어느 정도는 필요한 편	34.7 ↓	32.0 ↓	29.4 ↓
	·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	5.8 ~ 7.2	8.0 ~ 9.0	3.8 ~ 4.3
	·전혀 필요하지 않음	1.3 ↓	1.0 ↓	0.6 ↓
수준 및 내용 적절성	·매우 적절	12.7 ~ 80.0	22.0 ~ 78.0	20.0 ~ 79.4
	·대체로 적절한 편	67.3 ↓	56.0 ↓	59.4 ↓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	18.6 ~ 20.0	22.0	18.8 ~ 20.6
	·전혀 적절하지 않음	1.3 ↓	-	1.9 ↓
목적부합성 및 효과	·매우 도움	24.8 ~ 80.0	29.0 ~ 81.0	16.3 ~ 76.3
	·어느 정도 도움	55.2 ↓	52.0 ↓	60.0 ↓
	·그다지 도움되지 않음	18.3 ~ 20.0	16.0 ~ 19.0	21.9 ~ 23.7
	·전혀 도움되지 않음	1.6 ↓	3.0 ↓	1.9 ↓

주: 이해도 이하 문항은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질문했으며(피규제집단: N=308, 제3차집단: N=160), 무응답자는 제외함.

- 식품영양종사자에 대하여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92.8%), 집행공무원(91.0%), 제3차 집단(95.7%) 모두에서 높이 평가되었는데 규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공무원들의 평가가 피규제집단과 제3차집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규제의 현실적 부합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를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피규제집단이 80.0%, 집행공무원이 78.0%, 제3차집단이 79.4%로 나타났고, 이처럼 규제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제3차집단의 평가가 피규제집단이나 집행공무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것은 업소 이용자로서 식품안전에 관한 의식 수준 향상과 요구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여겨짐.
-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규정이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 및 건강관리를 통한 식품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피규제집단의 80.0%, 집행공무원의 81.0%, 제3차집단의 76.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정이 식품안전확보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모든 조사대상집단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규제 준수도

규제 준수도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음.

- 피규제집단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준수율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7.8%가 실제 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피규제집단의 규제 준수도의 진위를 알아보는 심층 조사가 추가로 필요함.
- 집행공무원과 제3차집단인 일반국민에게 피규제집단(업주 및 종사자)이 정기건강진단 실시의무 규정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집행공무원의 83.0%가 ‘잘 지켜지고 있다’(매우+대체로)라고 응답한 반면에 제3차집단은 45.5%만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응답해 제3차집단은 피규제집단 규제준수율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집행공무원과 제3차집단간의 규제준수율 차이는 식품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4> 규제 준수도 조사결과

(단위: %)

구분	응답내용	피규제집단 (N=368)	집행공무원 (N=100)	제3차 집단 (N=412)
행정규제 준수율	·매우 잘 지켜짐 ·대체로 잘 지켜짐 ·별로 잘지켜지지않는편 ·전혀 지켜지지 않음	85.1 ~ 97.8 12.7 ↓ 1.9 ~ 2.2 0.3 ↓	13.0 ~ 83.0 70.0 ↓ 17.0 -	5.6 ~ 45.5 39.9 ↓ 51.7 ~ 54.5 2.8 ↓
미준수 ²⁾ 이유	-	·바빠서 (33.3) ·장기근속직원 불필요(정규직) (33.3) ·입사초기미검진 (16.7) ·유사 중복검진 실시 (16.7)	·장기근속직원 불필요(정규직) (29.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9.4) ·단속인력부족 의 악용 (11.8) ·검진기관 이동불편 (농촌등) (11.8) ·기타 (17.7)	
준수 감시가능 여부	·현재 집행력 가능 ·현재 집행력 정도 적당 ·현재 집행력 불가능	-	16.0 46.0 38.0	-
벌칙 부과의 적절성	·강화 ·현재수준 ·완화	19.2 58.4 22.4	21.0 56.0 23.0	-

주: 준수율은 피규제집단의 경우 실제경험 기준이며, 집행공무원 및 제3차집단의 경우는 주관적 판단기준임.

- 규제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은 ‘바빠서’(33.3%)와 ‘장기근속직원의 정기검진은 불필요(33.3%)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집행공무원의 경우는 ‘대상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3.3%)와 ‘장기근속직원의 정기검진은 불필요’(33.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미준수 사유로는 피규제집단의 경우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시간적으로 불편하고 바빠서 지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장기근속직원의 경우 자체적인 건강검진(중복검진)을 받고 있어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규제자체의 필요성과 목적에 모든 조사대상집단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규제자체 준수도 향상보다는 효율적인 규제집행을 위한 탄력적인(정기검사기간 및 검사항목 등 조정) 규제집행의 대안마련이 필요함.
- 식품영양종사자들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대한 단속이 ‘현재의 집행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무원은 16.0%에 머물렀으며,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38.0%에 달해 집행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식품위생분야 감시전반에 관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평가됨.
- 현재 규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 ‘현 수준이면 적당하다’가 피규제집단의 58.4%, 집행공무원의 56.0%가 응답하였으며,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모두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보다는 미미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음.

- 현재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규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내용에 따라 업주는 최대 50만원, 종사자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6. 規制順應度 提高 方案

-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제3차 집단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현 수준의 규제 존치가 필요함.
- 다만 이상의 규제를 현장적용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탄력적인 규제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즉, 2002년 7월부터 실시하는 PL법(제조물책임법) 등에 적극적인 자체 대응 방안으로 관련 업체도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모든 업종의 일률적인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적용보다는 업종별 또는 업무별, 현장종사범위 등을 구분하여 검사기간이나 검사항목 등의 재조정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 必要性 및 背景

지난 국민의 정권부터 본격화된 규제개혁 즉,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으로 기존 행정규제의 폐지 및 완화 등 많은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를 거둔 한편 관련 집행공무원의 의지부족, 이해관련 집단의 반발 등으로 규제개혁의 실효성은 크게 못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 편익 및 공익 증대라는 규제개혁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반국민 및 업체 그리고 집행공무원 모두가 규제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규제순응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부처별 대상규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¹⁾

2003년 보건복지부 식품관련분야의 규제순응도 조사는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란주점의 시설기준 준수 규제순응도 조사』와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순응도 조사』이다.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검진실시』는 정기건강검진을 통하여 식품분야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이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지침』, 2003.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그 부과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자세하게 명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식품영업의 종사자 및 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규제에 관한 이해부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규제자체에 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규제에 관한 규제 준용도를 조사하여 규제준용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식품관련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당규제가 시의적으로 실효성 및 타당성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관련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의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관련업체의 업주·종사자, 집행공무원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는 연구 배경,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제2장에서는 규제준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규제준용도 조사관련 근거법령과 관련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규제 규제준용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규제준용도 조사결과에 관한 총평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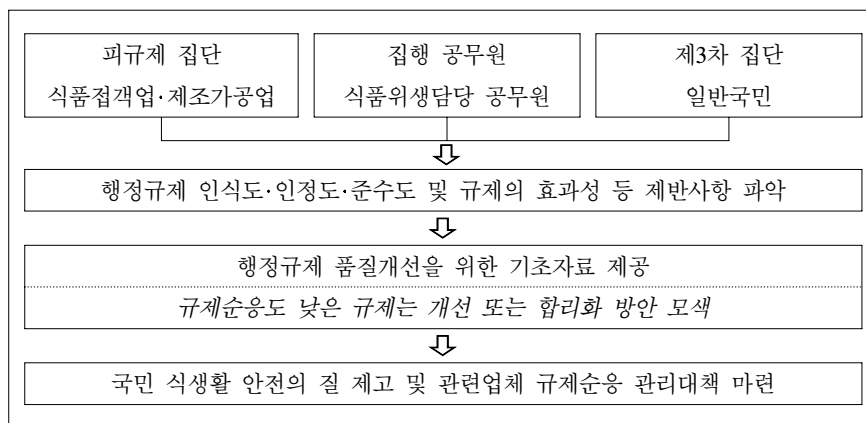
第 2 節 研究 目的

이 조사연구의 목적은 행정규제 인지도 및 준수율, 그리고 규제의 효과성 등 전반적인 규제순응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행정규제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보건복지부가 행정규제 개혁·개선관련 정책방향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규제 존재여부에 대한 인지도,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 규제 내용의 명확성 등에 관한 규제 인식도 조사
- 둘째,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내용)의 적정성, 규제의 목적부합성 등에 관한 규제 인정도 조사
- 셋째, 규제준수율, 규제준수 감시가능여부, 벌칙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한 규제 준수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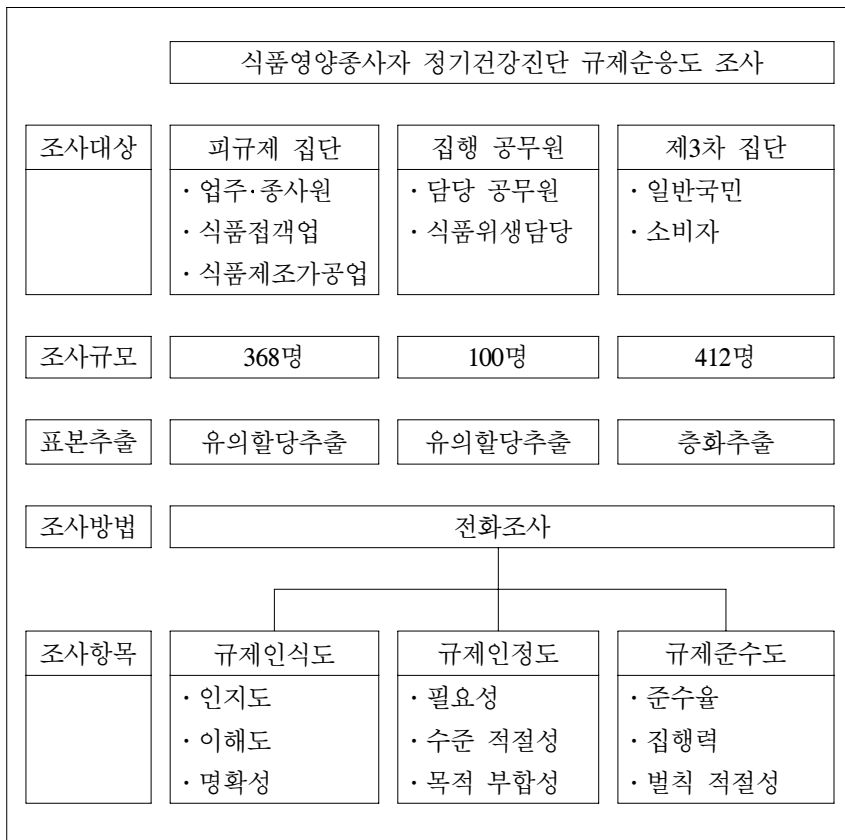
[그림 1-1] 분석 틀



第 3 節 研究 對象 및 方法

규제순응도 조사 개요가 [그림 1-2]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1-2] 규제순응도 조사 개요



1. 調査 對象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있는 영업자 및 그 종사원(피규제집단), 관련 공무원(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제3차집단)이 조사대상이다. 즉, 피규제집단은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이며²⁾, 집행공무원은 현장에서 관련 식품영업소를 담당하는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이며, 마지막으로 제3차 집단은 일반국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국민은 층화추출법에 의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피규제집단 및 집행공무원은 유의적추출법에 의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표 1-1〉 조사대상 선정

구분	내용
모집단	해당규제 관련자(업체 종사자 및 업주, 공무원) 및 일반국민
표본크기	880명(유효표본)
표본구성	피규제집단(관련업주 및 종사원): 368명 집행공무원(관련공무원): 100명 제3차집단(일반국민, 소비자): 412명
표본추출법	일반국민-층화추출법 피규제집단(종사자·업주) 및 공무원-유의할당추출법
조사방법	전화조사
조사시기	2003년 9월 22일~2003년 9월 27일(6일간)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기준임.

2. 研究 內容 및 方法

가. 연구 내용

1) 규제인식도

규제인식도 조사에서는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관한 규제의 인지도와 이해도 그리고 명확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즉, 인지도는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자체 인지도와 이 규제를 위반시 받게되는 행정처벌조항에 관한 인지도 등 2항목을 조사하였다.

2) 규제인정도

규제인정도 조사에서는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목적 부합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즉, 필요성은 정기건강진단실시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현 규제의 수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규제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규제자체가 부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3) 규제준수도

규제준수도 조사에서는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관한 규제준수율과 집행력 그리고 벌칙의 적절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즉, 규제 준수율은 피규제집단에게는 실제 경험상의 준수율을 조사하였고 집행공무원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는 피규제집단의 규제 준수율을 추정토록 하였다. 규제집행력에 관한 질문은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으며, 또한 규제위반시 행정처벌규정에 관한 벌칙의 적절성도 일반국민은 제외하였다.

나. 연구 방법

1) 자료 및 문헌고찰

행정규제의 정의와 규제관리에 관한 일반적 운영현황 및 식품영양종사자의 건강진단실시 규제에 관한 근거법령 등을 고찰·파악하고 관련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자치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식품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즉, 식품영양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관한 정책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문헌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2) 관련 전문가 회의개최

식품접객업 및 제조가공업소의 관련대표자, 일선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집행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해당 연구진과의 Brain-Storming을 통하여 관련규제 현황과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그리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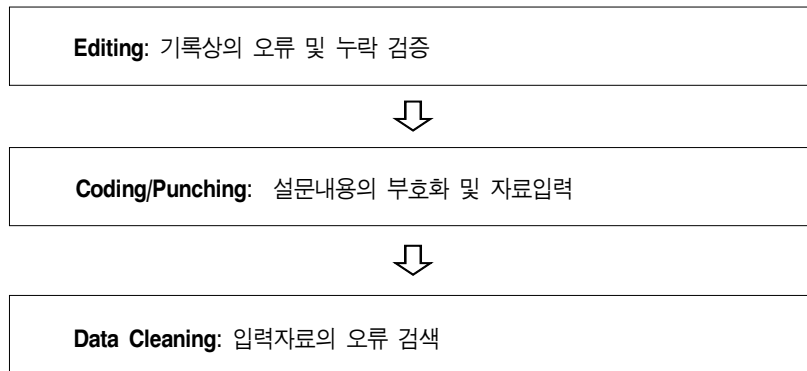
3) 조사 실시

식품영양관련 업소(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업무 및 종사자, 일선에서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순응도에 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조사팀에 의해 2003년 9월 22일~27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다.

3. 分析 方法

식품영양종사자(업주 및 종사자)와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 현황을 비롯하여 규제인식도·규제인정도·규제준수도에 관하여 조사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일반적인 특성 및 빈도를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그림 1-3] 전산처리 과정



第 2 章 規制順應에 관한 理論的 考察

第 1 節 規制順應³⁾

1. 規制順應의 擡頭 背景 및 概念

가. 규제개혁의 3단계

일반적으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은 3단계로 구분된다⁴⁾. 첫째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완화(deregulation) 단계로서, 이는 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규제순응비용의 감소 및 규제폐지를 통한 규제총량의 감소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정책의 추진과 아울러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부규제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규제는 엄청난 규제비용의 발생, 산업구조의 왜곡, 행정부조리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신자유주의적 흐름속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나타났다. 즉,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성장발전저

3) 한국정책학회,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2001. 재구성

4) OECD의 권고기준임.

해요인개선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와 부처 단위의 자율과제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규제개혁의 두 번째 단계는 규제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어느 정도 규제의 총량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규제품질관리 단계에서는 개별규제의 질적 관리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별 규제수단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규제적 수단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관심은 규제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서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보다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수단과 나아가서는 비규제적 수단의 모색과 도입으로 옮겨지게 된다. 즉,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규제순응비용이 적은 규제수단이나 조세, 보조금 등과 같은 비규제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거나 규제기획제도 등을 통한 규제품질의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규제개혁의 세 번째 단계는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이다. 이는 규제개혁이 과거처럼 규제의 총량이나 개별 규제의 질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전반적인 규제체제가 원래 의도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며, 이것이 규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관리단계에서는 성과지향적인 규제체제를 설계·구축하는 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성과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 개념이 제시되

고 있다. 이제 정부와 규제자들은 규제체제가 실질적인 규제목표의 달성에 있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준응을 극대화하고 있는지를 항상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나. 규제준응의 개념적 정의

규제준응이란 개념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규제정책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준응이란 정책에 있어서 대상집단이 정책 또는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규제준응을 규제정책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과 정책집행관료가 실질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규제준응의 명확한 개념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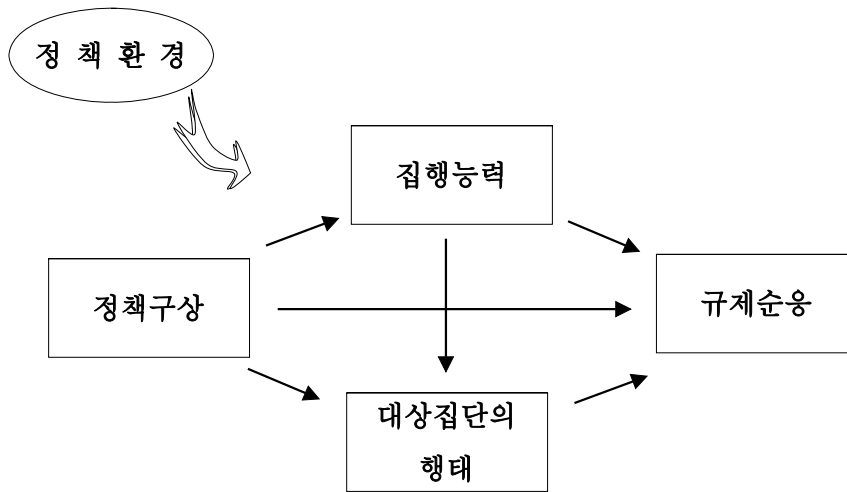
첫째, 규제준응에 있어서의 주체 문제이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준응의 주체는 크게 정책대상집단과 정책집행관료로 구분된다. 즉, 피규제자가 규제정책이 요구하는 기준에 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 역시 규제내용이나 수단을 성실히 실천에 옮길 때 정책목표의 달성은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준응의 문제를 주로 정책대상집단에 한정시키는 경향을 보여왔다. 정책집행자가 정책에 불응할 경우 정책의 왜곡이나 미집행(non-implementation) 등과 같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규제준응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순응대상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규제대상은 법규에 대한 순응(rule compliance)과 규제의 실제적 목적에 대한 순응(substantive compliance)으로 구분될 수 있다⁵⁾. 전자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 요구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동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실제적 순응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피규제집단의 행태가 규제의 실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예를 들면 환경의 정화나 직장내 사고의 축소 등과 연관된다. 따라서 법규순응이 산출(output)의 개념이라면 실제순응은 성과(outcome)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양자는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순응은 법규순응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체가 환경의 법적 규제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만약 사용된 기술에 문제가 있다면 환경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제순응을 실제순응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최근의 규제순응이란 개념이 성과지향적 규제체제의 구축과 연계되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순응 확보를 위해선 단순한 집행과정에서의 법규에 대한 순응뿐만 아니라 규제의 내용이나 수단 선택의 문제도 동시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5) OECD 권고사항 기준임.

2. 規制順應의 一般的 模型

[그림 2-1] 규제순응의 일반적 모형



가. 정책환경

규제의 순응 확보를 위해선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먼저 정치권의 관심과 지지가 요구되며, 또한 언론,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정책구상

정책구상(policy design)은 크게 규제내용과 규제수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규제정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성과 바람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규제순응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규제정책결정과 정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규제순응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규제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제3자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제3자로서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규제순응 여부를 감시하기도 한다.

다. 정책집행능력

규제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관료의 규제내용 인지, 집행관료의 헌신도(commitment), 정부간 관계 등을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 변수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규제를 일선기관에서 집행하는 관료의 인식과 행태는 규제순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간 관계, 즉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정보, 지식 등과 같은 집행자원의 문제, 그리고 집행 정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환류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 규제대상집단의 인식 및 행태

규제대상집단과 관련하여 피규제자의 인식과 행태, 규제내용 인지, 규제에 순응할 수 있는 능력, 보상체계, 자율규제 등을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규제의 효과는 궁극적

으로 피규제자가 규제에 순응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식 및 행태는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체계적 모형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변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비된 규제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도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 規制順應의 決定要因

규제순응의 개별적 결정요인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 정책환경 관련 변수

정책환경적 측면에서 규제순응과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정치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정치·사회적 변수로는 정부신뢰도와 국민의 법의식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 특히 규제정책기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경우 정책대상집단은 정책목표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정부규제에 반감을 드러내고 심리적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규제의 순기능이나 필요성은 배제된 채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만들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법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관행도 규제순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사회문화가 법치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표 2-1〉 규제순응의 결정요인

구분	주요요인	세부내용
정책환경	정치사회적 여건	정부신뢰도, 국민의 법의식
	경제적 여건	정부, 기업 및 개인의 경제적 상황
정책구상	정책결정과정	민주성, 투명성
	정책내용	소망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정책수단	규제수단의 혼합적, 순차적 선택
	협조체제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집행능력	정책결정자	순응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
	집행자원	예산, 인력규모, 관료의 자질
	집행구조	중앙부처간, 중앙 및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정책이해도	정책인지, 관련정보
대상집단	감독/환류	모니터링, 결과 환류
	순응능력	인력, 시설, 자금, 기술
	순응의지	정책목표에 대한 지지, 규제에 대한 거부감
	정책이해도	정책내용의 이해 정도

예를 들어, 교통법규의 불응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규제정책이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Anderson(1984: 104)은 이를 선택적 불복종(selective disobedience)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특정 정책에 불응하는 것이 위법적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될지라도 강도, 절도와 같은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심리적 구속감을 덜 받는 데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상황은 우선 피규제자의 순응능력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띤다.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경기침체시에는 기업들이 산업안전이나 보건의 규제를 따르는 데 한계를 지닌다(OECD, 1999:7). 또한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규제비용을 감당하는 데 거부감을 보일 것이다. 정부 또한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시기임으로 규제정책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나. 정책구상 관련 변수

정책구상(policy design)단계는 규제순응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책결정과 집행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정책결정의 내용이나 과정에 따라 집행상의 불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결정과정, 정책내용, 정책수단, 협력체제 및 정책결정자의 인식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 개별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여야 한다. 규제정책은 상반되는 이해관계집단의 정치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경제적 질서를 창출·유지하는 정부의 노력을 의미한다(최병선, 1991: 39). 즉,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호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은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보장되고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⁶⁾ 이럴 경우에만 집행과정에서 규제관련자들의 순응을 제고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둘째, 정책내용(policy content)은 정책형성과정의 산물로서, 정책집행의 방향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Hargrove, 1983).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내용에는

6) 신희권(199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지역상공인 모두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상호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크게 네 가지의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정책내용 자체가 사회적 규범이나 통념으로 볼 때 바람직해야 한다. 이러한 소망성(desirability)은 일반국민이나 규제대상집단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시 불필요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책내용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간에 정책목표 및 수단을 둘러싼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수행을 가능케 한다. 이럴 경우에만 규제대상집단뿐만 아니라 집행관료들로부터도 지지와 협조, 나아가 순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내용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정책내용이 관련 정책과도 유사한 방향성을 띠어야 하는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모순이 없어야만 순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현가능성이란 정책내용이 현실적 여건과 일치하는 정도를 뜻하며, 만약 양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면 집행상의 어려움, 특히 형식주의를 초래하기 쉬울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적,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현장에서의 순응용이성까지도 포함된다.

정책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불량규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불량규제란 피규제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기관의 이해관계가 중시되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민간부문의 의식과 능력을 불신하는 과도한 권위주의적 규제, 비현실적이어서 지키기는 어려우나 편법과 탈법을 유도하는 규제, 규제상호간에 모순과 불일치가 나타나는 규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규제연구회, 1998). 이는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피규제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불법과 비리를 조장함으로써 규제순응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량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의 불량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수 있는 규제결정상의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적절한 규제수단의 선택은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외국의 이론이나 경험에서 살펴봤듯이, 정부규제에서 점차 민간과의 공동규제 내지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특히 하나의 규제수단만을 선택한다는 기존의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순차적으로 복수의 수단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어떠한 규제수단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명령 지시적이 아닌 자발적 규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넷째, 민간과의 협조체계를 정책구상단계에서 미리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다원주의의 관점에서 피규제자의 순응을 설득하고 자극할 수 있는 시민단체 또는 관련전문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은 특별한 중요성을 띤다. 또한 이는 규제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순응에 대한 규제정책결정자의 인식 및 행태도 중요한 변수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결정자들은 일단 규제를 만들면 대상집단이 당연히 순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하향적(top-down) 시각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규제순응 확보의 관점에서 피규제자의 어려움이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려는 의지가 낮은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규제정책의 목표달성은 규제순응이 전제될 때 확보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규제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들이 집행과정에서의 순응 여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규제순응에 대한 규제결정자들의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결정과정에서 규제순응 문제를 사전에 심

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한 규제순응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정책집행능력 관련 변수

정책집행기관이 무능한 경우에는 규제기관은 정책대상집단으로부터의 순응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첫째는 집행자원의 적절성이다. 만약 집행기관이 충분한 예산이나 유능한 인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규제의 순응 여부를 감시하고, 불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감시가 시기나 대상의 측면에서 편중성을 띠어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집행자원의 문제는 특히 규제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치사회적 인식이 낮고, 그 결과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질 때 심각하게 나타난다(최병선, 1991:40).

집행관료의 자질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만연된 그들의 부정 또는 비리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관료의 비리는 규제결정단계에서 정책내용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재량권 축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규제정책의 비현실성 또는 형식성이 관료들의 재량적 판단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그들의 지대추구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조리에 타성이 젖은 규제집행관료들 자신의 개인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규제순응은 물론 피규제자의 순응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집행기관간의 관계도 정책순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규제개혁추진기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조정, 규제결정기관과 추진기관간의 업무공조(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관계)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집행체계의 업무수행능력이 제고될 뿐더러 규제현장에서의 개혁체감도도 향상될 것이다.⁷⁾

셋째, 규제집행관료가 규제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련정보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순응을 제고하기 어렵다. 이는 규제관료의 집행 강도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집행상의 비일관성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규제대상집단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은 불응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규제집행기관이 규제의 이행 정도,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규제의 내용이나 수단 선택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규제 현장의 실정과 대상집단의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 즉 지속적인 규제품질개혁이 수반될 때 규제순응은 향상될 수 있다.

라. 정책대상집단 관련 변수

규제순응의 궁극적 주체는 규제대상집단이다. 그런데 이들의 규제순응에 미치는 요인들은 실로 다양하다. [그림 2-1]에서 보여지듯이, 앞에서 언급한 규제환경, 규제결정, 규제집행 등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이 이들의 순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는 규제순응과 관련된 규제대상집단의 자체적인 요인들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규제대상집단의 순응능력이다. 순응능력은 그들이 순응하는데 요구되는 경제적(인력, 시설, 자금 등) 및 기술적 요소들을 의미한다. 아마 대상집단이 순응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불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규제대상집단의 순응의지도 중요한 변수이다. 그들의 순응의

7)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가 지닌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김종석 외 (1999:22~29)를 참조가 필요함.

지는 규제라는 통제적 정부활동에 대한 거부감이나 정책목표에 대한 지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순응하는 것이 단순히 귀찮다거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기 싫은 경우, 그리고 법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의해서도 불응이 나타날 수 있다(정정길, 1989:573).

셋째, 정책내용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냐의 여부도 규제순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의 경우 피규제자가 규제내용을 제대로 몰라 불응하게 되는 경우가 일선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국무총리실, 1999; 박상주, 1999). 이러한 현상은 피규제자의 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도 발생하겠지만, 규제담당관료들이 규제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데 기인하기도 한다.

4. 規制順應 向上을 위한 一般的 原則

규제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칙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정부의 개입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능률성, 효과성, 정치적 수용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 능률성의 관점에서 정부개입의 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모니터링과 강제를 위하여 상당한 행정자원이 소요되며, 그 효과나 성과 또한 분명치가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표 2-2〉 규제순응 향상을 위한 일반적 원칙

원칙	내	용
원칙 1	규제현장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1-1	규제현장의 문제 파악·분석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1-2	규제대상집단의 특성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는 문제파악이 되어야 한다.	
1-3	규제의 문제 확인 및 분석 활동은 지속성을 띠어야 한다.	
원칙 2	규제정책의 내용 및 결정과정이 규제순응친화적이어야 한다.	
2-1	규제결정이 규제현장의 문제파악을 기초로 행해져야 한다.	
2-2	규제개혁추진기관내에서의 업무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2-3	규제결정시 규제대상집단 및 제3차 집단의 의견수렴을 공식화한다.	
원칙 3	규제순응 확보를 순차적 접근전략을 수립·실시한다.	
3-1	규제수단은 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3-2	가능한 한 규제대상집단에게 규제수단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3-3	다양한 규제수단이 순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원칙 4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4-1	규제대상집단 및 집행관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과 그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인식시켜야 한다.	
4-2	제3차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규제정책공동체를 형성한다.	
4-3	규제정책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정치사회의 지지를 확보한다.	
원칙 5	규제정책의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5-1	규제기관의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충을 도모한다.	
5-2	규제대상집단의 규제순응능력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한다.	
원칙 6	규제순응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6-1	지속적으로 규제순응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6-2	규제순응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한다.	
6-3	규제순응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반면 정부개입의 정도가 약한 정책수단일수록 기업에게는 더 큰 융통성이 부여되므로 능률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정치적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규제수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OECD,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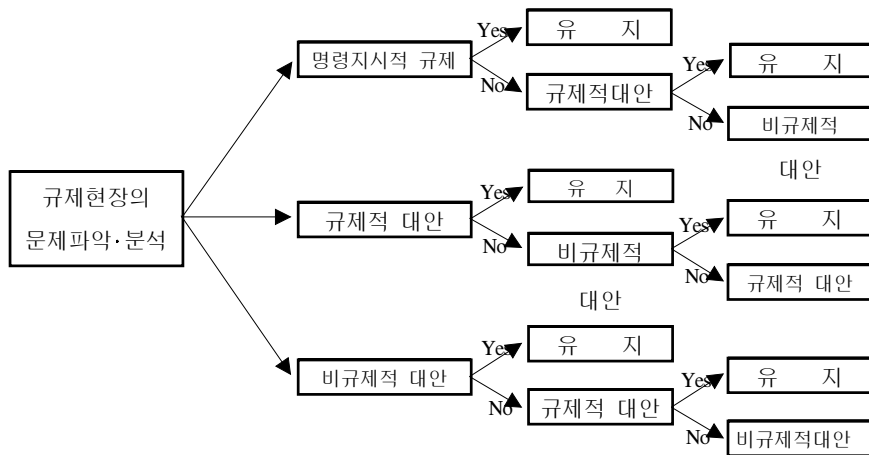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의 정부에 의한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은 민간의 규제순응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규제수단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대상집단의 자율규제 능력이나 의지는 선진외국들과는 달리 많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광범위한 규제대안을 적극 활용하는 신축적인 규제순응 확보전략의 설정이 요구된다. 한국정책학회⁸⁾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순차적 접근전략이란 “정부가 행한 규제현장의 문제 파악 및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대상에게 적합한 규제수단을 택한 후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규제수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모형화한 것이 [그림 2-2]에 제시되어 있다.

5. 規制順應의 確保와 規制의 質 提高方案

첫째, 규제대상집단에 대한 선별적 개별적 규제기준 및 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 규제순응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대상집단을 환경성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인 규제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8) 한국정책학회,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2001.에서 제시된 연구내용 인용.

[그림 2-2] 규제순응의 순차적 접근모형



둘째, 최근 여러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자율규제는 자율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계의 소속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규제수준을 잘 따르는 경우에는 자율규제가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 업체들이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강제적 통제수단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자율규제는 지시통제적 강제수단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셋째, 규제순응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자발적 협약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사회의 갈등 조정능력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해집단들간의 협상조정능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선진국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넷째, 규제다원주의에 기초한 규제순응 확보전략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경제적 수단, 규제순응관련 정보의 공개,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배출에 대한 자료의 공개, 전통적 명령강제방식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규제수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규제대상집단과 규제기관의 파트너십 확보도 중요하다. 규제기관이 규제대상기관과 협력하여 규제대상의 정확한 현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규제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第 2 節 規制順應度

1. 規制順應度 調査指針⁹⁾

가.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지침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서를 작성·발간하여 부처별 규제순응도 조사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제4장에서 언급될 규제순응도 조사결과와 관련한 조사항목 등의 결정과 조사대상집단의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개진한다.

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지침』 2003. 재구성함.

1) 조사항목의 결정

- 조사설계도에서 제시한 규제의 인식·인정·준수의 각 단계별 항목을 모든 조사대상집단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음.
- 결과가 자명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규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배제 가능함.
 - 규제집행공무원에 대한 규제의 존재여부에 대한 질문, 제3차 집단인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에 대한 질문 등
- 반면 9개의 조사항목이외에도 필요시 그 원인을 묻는 질문 등 조사항목을 추가함.
 - 규제내용의 명확성 및 수준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통해 보완할 내용을 파악함.
 - 또한 기본조사 항목 이외에 해당부처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유사한 조사를 통한 비용 발생 억제
- 전화 또는 설문조사시 규제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규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조사함.

2) 조사대상집단의 선정

- 규제주체에 대한 조사
 - 규제주체인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 실시
- 제3차 집단에 대한 조사
 - 제3차 집단 선택시 피규제자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자 등 직·

간접적으로 규제와 관련이 있는 국민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조사도 병행

3) 조사표본 및 지역

- 피규제집단 및 집행공무원 등의 조사표본수를 적정 수준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 조사지역도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전국에 걸쳐 조사 실시

4) 조사결과 활용

가) 조사결과 분석·평가

- 조사항목별 응답결과를 토대로 규제의 성격에 따라 목표기대치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가 실시
 - 또는 전체항목에 대한 응답결과 등을 항목간 상호 비교·평가
- 조사결과 평가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분석을 실시
 - 순응도 제고대책 수립전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검증·원인분석을 추진
 - 필요시 집행실태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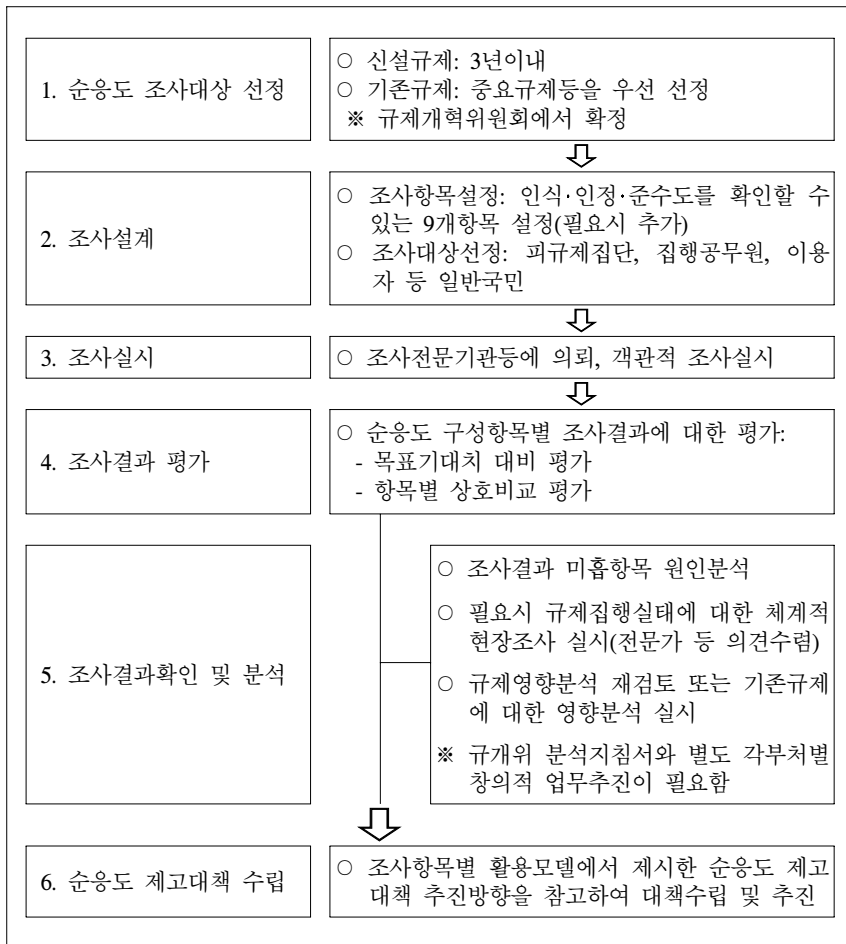
나) 순응도 제고대책(규제개선방안) 강구

- 항목별 조사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순응도 제고방안을 마련
 - 일반적·추상적인 개선방안은 지양하고, 구체적·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
 - 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규제 폐지 또는 새로운 규제대안을 제시

2. 規制順應度 調査設計

규제순응도 조사를 위한 관리흐름에 관한 개요를 아래의 [그림 2-3]에 제시하였다.

[그림 2-3] 규제순응 관리 흐름 개요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순응도조사 및 활용지침』, 2003. 재구성함.

3. 2003年 規制順應度 調査

가. 기본방향

아래에는 2003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순응도 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규제설계단계부터 규제의 순응도를 고려토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원활한 집행 도모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시 규제의 필요성,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 규제순응도 측면을 철저히 검토
-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중요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실시
 - 각부처는 다빈도 민원제기 관련규제, 이해관계집단의 갈등이나 문제점이 표출된 규제, 존속기간 도래규제를 중심으로 자체조사
- 순응도 조사결과가 객관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을 보완 시행
 - 조사항목의 보완, 조사표본의 적정수준 확보, 조사대상집단의 확대, 전문조사기관의 활용 등
- 순응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규제폐지 또는 새로운 규제대안을 반드시 제시

나. 규제정책의 순응성 확보

1) 규제현장의 문제파악·분석을 위한 체계 구축

규제분야별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규제현장의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2) 규제정책 입안시 규제순응도 측면의 검토 강화

규제목적 실현가능성,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규제 비용·편익 등 규제영향분석시 피규제자 입장에서 순응도를 철저히 검토하고, 규제자의 개인적 판단 및 정보에 의존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개선하여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분석 실시

다. 순응도 조사 및 활용체계

1)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중요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

2) 각 부처는 다빈도 민원제기 관련 규제, 이해관계집단의 갈등이나 문제점이 표출된 규제, 존속기간 도래규제를 중심으로 자체조사 하되, 신설·강화규제 심사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조사

- 조사대상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2개 이상 선정
 ⇒ 각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자체조사 과제에 대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응도 제고대책(규제개선방안)을 마련

라. 조사설계

<표 2-3>에는 규제순응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표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인식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특성상 집행공무원에게는 규제인지도, 제3차집단에게는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문항, 그리고 규제인정도 조사에서 제3차집단은 규제의 수준적절성 조사를 생략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준수도 조사에서도 제3차집단을 대상으로 규제행정 집행력 수준을 묻는 문항은 생략하였다.

<표 2-3> 규제순응도 조사설계

구분	조사항목	응답내용	조사대상집단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규제 인식도	인지도	· 인지 · 비인지	○	-	○
	이해도 ¹⁾	·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음 · 말만 들어본 정도	○	○	○
	내용 명확성	· 매우 명확 · 대체로 명확한 편 · 별로 명확하지 않은 편 · 전혀 명확하지 않음 · 모름/무응답	○	○	-
	내용 불명확 사유 ²⁾	-	○	○	-

주 : 1) “이해도”는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질문

2) “내용 불명확 사유”는 규제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

〈표 2-3〉 계속

구분	조사항목	응답내용	조사대상집단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규제 인정도	필요성	· 반드시 필요 · 어느 정도는 필요한 편 · 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	○
	수준 적절성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한 편 ·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 · 전혀 적절하지 않음 · 모름/무응답	○	○	-
	수준 부적절 사유 ³⁾	-	○	○	-
	목적 부합성	· 매우 도움 · 어느 정도 도움 ·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	○
규제 준수도	규제 준수율 ⁴⁾	· 매우 잘 지켜짐 · 대체로 잘 지켜짐 · 별로 잘 지켜지지 않는 편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	○
	미준수 사유 ⁵⁾	-	○	○	○
	행정규제 집행력	· 현재 집행력으로도 충분 · 현재 집행력이 적당 · 현재 집행력으로는 불가능	○	○	-
	벌칙 부과 적정성	· 강화 · 현재수준 · 완화 · 모름/무응답	○	○	○

주 : 3) “수준 부적절 사유”는 규제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
 4) “규제준수율”은 집행공무원과 제3차 집단은 ‘인지’를 피규제집단은 ‘경험’을 기준으로 질문
 5) ‘미준수 사유’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

第 3 章 根據法令 및 關聯 現況

第 1 節 規制順應度 調査關聯 根據法令

1. 行政規制基本法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에 관한 내용은 [부록3]에 첨가하였으며 이 장에서는 대략적인 행정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및 분류기준에 관한 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지침자료¹⁰⁾에서 발취하여 정리하였다.

가. 행정규제의 개념 및 범위

1) 행정규제기본법령의 규정

①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규제의 정의)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②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행정규제의 범위)

1.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10)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 기준』, 2000. 재인용

2.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③ 동법 제3조 제2항(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 행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④ 동법 시행령 제3조(적용하기 곤란한 사무)

1.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나. 행정규제의 개념·범위

행정규제는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

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이다. 즉,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한다.

다. 행정규제의 내용

1)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국민에게 “부담적이나 수익적 규정이나”가 판단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가 판단기준이다.

2)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중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이나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행정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이다.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사무(적용제외)
 - 범죄수사 등 형사관련 사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라. 행정규제의 형식

- 1) 행정규제는 ‘법령등’에 규정된 것으로 ‘법령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조례규칙, ‘고시등’(고시, 공고, 예규, 훈령)을 지칭한다.
- 2) ‘법령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등록, 규제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는 아니나, 규제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법령미근거 규제가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법 부칙 제4조).

第 2 節 健康診斷實施 根據法令(食品衛生法)

1. 食品衛生法

가. 식품위생법 현황

식품위생법 제26조 (건강진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6조 (건강진단)

- 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이상의 제26조 건강진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법 제78조의 과태료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8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5.12.29, 2000.1.12, 2002.8.26>
 1. 제3조,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건강진단 대상자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4조 (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2003.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표 3-1>에는 1994년 제정된 건강진단 규제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액 부과 근거조항을 신설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최초 제정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주와 종사원이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아래의 <표 3-2>의 설명과 같이 개정이후 업주와 종사원의 과태료액에 차등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는 업주들이 실제 조리 및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관련업주들의 의식고취를 위한 조치였다고 사료된다.

〈표 3-1〉 과태료 관련 조항 제정(1994년 12월 31일)

근거법령	위반사항	과태료액
법 제26조 제1항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¹⁾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0만원
법 제26조 제3항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²⁾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 킨자 (1)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종사원수가 4인 이하인 경우 가)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나)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 사시킨자	5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주: 1) 과태료액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 3-2>에 제시함.

2) 제정 이후 세부 과태료액의 변경은 없음.

<표 3-2>에는 관련규제를 위반할 경우 업주 및 종사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변경사항을 관련법 개정 순서별로 정리하였다. 최초에는 관련종사자(업주 및 종사원)가 동일하게 과태료액(1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1996년도 개정부터는 영업자와 종사원의 과태료액의 부과금액을 차등을 두어 영업자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도 개정에는 영업자와 종사원을 완전히 분리하여 과태료액을 부과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집단급식소가 식품접객업종에 포함되면서 개정 이후 집단급식소 또한 건강진단규제가 강화되었다.

〈표 3-2〉 과태료 관련 조항 개정변경 현황

구분	위반사항	과태료액
1994년 12월 31일 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0만원
1996년 10월 14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종업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30만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및 영업자(종업원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10만원
1999년 11월 13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20만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2003년 4월 22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20만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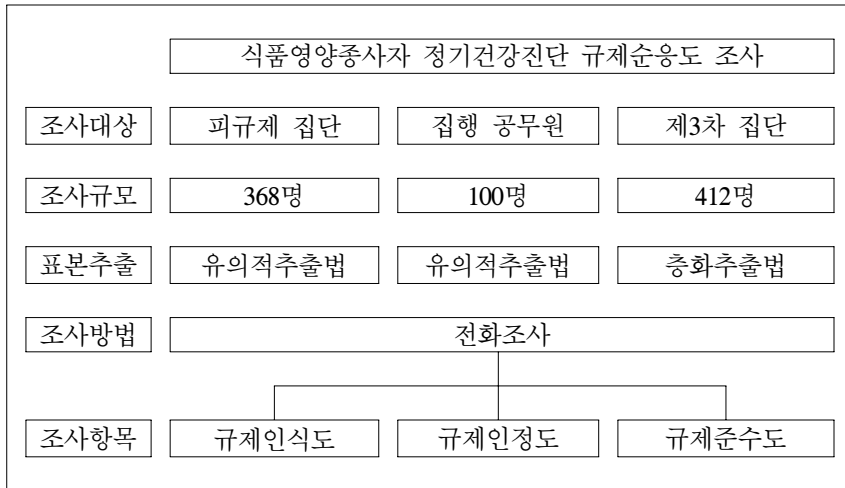
주: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임.
 자료: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금액).

第 4 章 規制順應度 調査結果

第 1 節 調査概要

이미 제2장의 [그림 2-1]에서 규제순응도 조사연구에 관한 조사개요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을 [그림 4-1]에 제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규제를 접하고 있는 피규제집단, 현장의 규제를 감시·감독하는 집행공무원 그리고 규제의 제3차집단인 일반국민(소비자)를 대상으로 규제인지도, 규제인정도, 규제준수도의 3개의 범주의 총 9개 항목을¹¹⁾ 조사하였다.

[그림 4-1]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11) 규제인식도(인지도, 이해도, 명확성), 규제인정도(필요성, 수준적절성, 목적부합성), 규제준수도(준수율, 집행력, 벌칙적절성)

第 2 節 調査結果 要約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한 규제순응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에는 조사 대상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별로 살펴보면 피규제집단의 368명 중 38.9%인 143명이 업주였으며 종사원은 전체의 61.1%인 225명이었다.

규제집행 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100명이었으며 일반국민인 제3차 집단은 412명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결과 총괄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피규제집단(업체)	368	100.0
- 업주	143	38.9
- 종사자	225	61.1
규제집행자(공무원)	100	100.0
제3차 집단(소비자)	412	100.0

<표 4-2>에서는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규제인식도, 인정도, 준수도에 관한 전체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규제인식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규제자체의 인지도는 업체종사자들의 인지도가 83.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국민들은 36.8%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규제위반시 처벌규정에 관한 인지도의 조사에서는 업체종사자의 58.4% 그리고 일반국민의 32.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실제 업체 종사자보다 일반국민들의 규제 인지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규제 이해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잘알고 있다”고 응답한 피규제집단은 전체의 19.8%, 집행공무원은 79.0%로 나타난 반면에 피규제집단의 60.7%, 집행공무원의 21.0%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일반국민은 규제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58.8%가 “말만 들었다”라고 응답하여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규제 내용의 명확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이 각각 82.3%, 81.0%가 “명확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규제 내용의 명확성은 조사대상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규제인정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피규제집단의 92.8%, 집행공무원의 91.0% 그리고 일반국민의 95.6%가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규제의 필요성에는 모든 대상자들이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규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피규제집단의 80.0%, 집행공무원의 78.0%, 일반국민의 79.4%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식품영양종사자들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종사자의 건강 및 식품안전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피규제집단의 80.0%, 집행공무원의 79.0%, 일반국민의 76.3%가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여 규제자체의 필요성과 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목적부합정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높은 인정도를 보여주었다.

셋째, 규제준수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 준수율의 응답결과에서는 피규제집단의 97.8%, 집행공무원의 83.0%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일반국민의 45.5%만이 대상업체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일반국민의 규제준수율에 대한 결과가 실제 나머지 두 집단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여주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규제 집행력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당하다”의 16.0%보다 “부족하다”가 38.0%로 2배 더 높아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능력 부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조사결과는 일반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종사자들의 낮은 규제준수율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벌칙부과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의 58.4% 그리고 56.0%가 “현재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규제완화나 강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는 피규제집단 대상별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으로 분류하였고, 조사대상별로는 영업주와 종사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4-2〉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요약(1)

(단위: 명, %)

구분			업체		공무원		소비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식도	인지도 (의무규정)	계	368	100.0	-	-	412	100.0
		인지	308	83.7	-	-	160	38.8
		비인지	60	16.3	-	-	252	61.2
	인지도 (처벌규정)	계	308	100.0	100	100.0	160	100.0
		인지	180	58.4	98	98.0	52	32.5
		비인지	128	41.6	2	2.0	108	67.5
	이해도	계	308	100.0	100	100.0	160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79	79.0	6	3.8
		대략 알고 있음	187	60.7	21	21.0	60	37.5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100	100.0	-	-
		매우 명확함	46	15.0	30	30.0	-	-
		명확함	206	67.3	51	51.0	-	-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19	19.0	-	-
	불명확이유	매우 명확함	2	0.7	-	-	-	-
본문참조								
인정도	필요성	계	308	100.0	100	100.0	160	100.0
		만드시 필요함	179	58.1	59	59.0	106	66.3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32	32.0	47	29.4
		별로 필요없음	18	5.8	8	8.0	6	3.8
		전혀 필요없음	4	1.3	1	1.0	1	0.6
	수준적절성	계	308	100.0	100	100.0	160	100.0
		매우 적절하다	39	12.7	22	22.0	32	20.0
		대체로 적절함	206	67.3	56	56.0	95	59.4
		별로 적절하지 않음	57	18.6	22	22.0	30	18.8
		전혀 적절하지 않음	4	1.3	-	-	3	1.9
	목적부합성	계	306	100.0	100	100.0	160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29	29.0	26	16.3
		조금 도움이 됨	169	55.2	52	52.0	96	60.0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16	16.0	35	21.9
전혀 도움이 안됨		5	1.6	3	3.0	3	1.9	
준수도	준수율	계	308	100.0	100	100.0	143	100.0
		매우 잘 지키	262	85.1	13	13.0	8	5.6
		대체로 잘 지키	39	12.7	70	70.0	57	38.9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17	17.0	74	51.7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	-	4	2.8
	규제집행력	계	-	-	100	100.0	-	-
		충분함	-	-	16	16.0	-	-
		적당함	-	-	46	46.0	-	-
		부족함	-	-	38	38.0	-	-
	별척부과 적정성	계	308	100.0	100	100.0	-	-
		강화	59	19.2	21	21.0	-	-
		현재수준유지	180	58.4	56	56.0	-	-
		완화	69	22.4	23	23.0	-	-

〈표 4-2〉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요약(2)

(단위: 명, %)

구분			총계		업종별				응답대상별			
					제조가공		식품접객		업주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식도	인지도 (의무규정)	계	368	100.0	289	100.0	79	100.0	143	100.0	225	100.0
		인지	308	83.7	242	83.7	66	83.5	131	91.6	177	78.7
		비인지	60	16.3	47	16.3	13	16.5	12	9.3	48	21.3
	인지도 (차별규정)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31	100.0	177	100.0
		인지	180	58.4	138	57.0	42	63.6	86	65.6	94	53.1
		비인지	128	41.6	104	43.0	24	36.4	45	34.4	83	46.9
	이해도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31	100.0	177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55	22.7	6	9.1	39	29.8	22	12.4
		대략 알고 있음	187	60.7	146	60.3	41	62.1	76	58.0	111	62.7
		말만 들었음	60	19.5	41	16.9	19	28.8	16	12.2	44	24.9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31	100.0	175	100.0
		매우 명확함	46	15.0	38	15.8	8	12.1	24	18.3	22	12.6
		명확함	206	67.3	160	66.7	46	69.7	86	65.6	120	68.6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42	17.5	10	15.2	19	14.5	33	18.9
		매우 명확함	2	0.7	-	-	2	3.0	2	1.5	-	-
인정도	필요성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31	100.0	177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147	60.7	32	48.5	72	55.0	107	60.5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81	33.5	26	39.4	43	32.8	64	36.2
		별로 필요없음	18	5.8	13	5.4	5	7.6	12	9.2	6	3.4
		전혀 필요없음	4	1.3	1	0.4	3	4.5	4	3.1	-	-
	수준적절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30	100.0	176	100.0
		매우 적절하다	39	12.7	31	12.9	8	12.1	14	10.8	25	14.2
		대체로 적절함	206	67.3	165	68.8	41	62.1	82	63.1	124	70.5
		별로 적절하지 않음	57	18.6	42	17.5	15	22.7	31	23.8	26	14.8
		전혀 적절하지 않음	4	1.3	2	0.8	2	3.0	3	2.3	1	0.6
	목적부합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31	100.0	175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60	25.0	16	24.2	26	19.8	50	28.6
		조금 도움이 됨	169	55.2	141	58.8	28	42.4	72	55.0	97	55.4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37	15.4	19	28.8	32	24.4	24	13.7
		전혀 도움이 안됨	5	1.6	2	0.8	3	4.5	1	0.8	4	2.3
준수도	준수율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31	100.0	177	100.0
		매우 잘 지킴	262	85.1	214	88.4	48	72.7	115	87.8	147	83.1
		대체로 잘 지킴	39	12.7	25	10.3	14	21.2	15	11.5	24	13.6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2	0.8	4	6.1	1	0.8	5	2.8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1	0.4	-	-	-	-	1	0.6
	규제집행력	계	-	-	-	-	-	-	-	-	-	-
		충분함	-	-	-	-	-	-	-	-	-	-
		적당함	-	-	-	-	-	-	-	-	-	-
		부족함	-	-	-	-	-	-	-	-	-	-
	벌칙부과 적정성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31	100.0	177	100.0
		강화	59	19.2	54	22.3	5	7.6	26	19.8	33	18.6
		현재수준유지	180	58.4	140	57.9	40	60.6	70	53.4	110	62.1
		완화	69	22.4	48	19.8	21	31.8	35	26.7	34	19.2

第 3 節 規制順應度 調査結果

1. 被規制集團(業主 및 從事者) 調査結果

가. 조사대상 일반적 현황

〈표 4-3〉 피규제집단 일반적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지역	계	368	100.0
	서울	49	13.3
	부산	13	3.5
	대구	9	2.4
	인천	24	6.5
	광주	7	1.9
	대전	4	1.1
	울산	4	1.1
	경기	106	28.8
	강원	11	3.0
	충북	26	7.1
	충남	39	10.6
	전북	16	4.3
	전남	16	4.3
	경북	12	3.3
	경남	27	7.3
	제주	5	1.4
	업종	계	368
제조가공업		289	78.5
식품접객업		79	21.5
휴게		20	5.4
일반		20	5.4
단란		19	5.2
유흥		20	5.4
조사대상		계	368
업 주	143	38.9	
종사자	225	61.1	

<표 4-3>에는 조사대상인 피규제집단의 일반적인 현황을 제시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전체 368명 중 106명인 28.8%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13.3%를 차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이 289명인 78.5%로 식품접객업의 21.5%보다 많았다. 종사원은 업주와 종사자로 나누어 조사되었는데 종사자가 전체의 61.1%로 업주 38.9%보다 많이 조사되었다.

<표 4-4> 피규제집단 조사대상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업종별				응답대상별			
			제조가공		식품접객		업주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68	100.0	289	100.0	79	100.0	143	100.0	225	100.0
서울	49	13.3	33	11.4	16	20.3	19	13.3	30	13.3
부산	13	3.5	9	3.1	4	5.1	5	2.1	8	3.6
대구	9	2.4	5	1.7	4	5.1	3	5.6	6	2.7
인천	24	6.5	20	6.9	4	5.1	8	2.1	16	7.1
광주	7	1.9	3	1.0	4	5.1	3	0.7	4	1.8
대전	4	1.1	-	-	4	5.1	1	2.1	3	1.3
울산	4	1.1	1	0.3	3	3.8	3	0.4	1	0.4
경기	106	28.8	98	33.9	8	10.1	42	29.4	64	28.4
강원	11	3.0	7	2.4	4	5.1	5	3.5	6	2.7
충북	26	7.1	22	7.6	4	5.1	10	7.0	16	7.1
충남	39	10.6	35	12.1	4	5.1	13	9.1	26	11.6
전북	16	4.3	12	4.2	4	5.1	8	5.6	8	3.6
전남	16	4.3	12	4.2	4	5.1	6	4.2	10	4.4
경북	12	3.3	8	2.8	4	5.1	5	3.5	7	3.1
경남	27	7.3	23	8.0	4	5.1	12	8.4	15	6.7
제주	5	1.4	1	0.3	4	5.1	-	-	5	2.2

<표 4-4>는 피규제집단의 조사대상을 지역별, 업종별, 조사대상별로 나누어 조사된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 4-5〉 피규제집단 조사대상별 업종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업주		종사자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계	368	100.0	143	100.0	225	100.0	
제조가공업	289	78.5	116	81.1	173	76.9	
식품접객업	소계	79	21.5	27	18.9	52	23.1
	휴게음식	20	5.4	8	5.6	12	5.3
	일반음식	20	5.4	9	6.3	11	4.9
	단란주점	19	5.2	7	4.9	12	5.3
	유흥주점	20	5.4	3	2.1	17	7.6

<표 4-5>에는 피규제집단의 조사대상별 업종 현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4-6〉 피규제집단 조사업종별 응답대상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제조가공		식품접객업종									
					소계		휴게음식		일반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68	100.0	289	100.0	79	100.0	20	100.0	20	100.0	19	100.0	20	100.0
업주	143	38.9	116	40.1	27	34.2	8	40.0	9	45.0	7	36.8	3	15.0
종사자	225	61.1	173	59.9	52	65.8	12	60.0	11	55.0	12	63.2	17	85.0

<표 4-6>에는 업종별 종사자 현황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피규제집단의 업종별, 종사원 구분별 규제순응도(인식도, 인정도, 준수도) 조사결과는 [부록 4]에 자세히 제시하였으며 <표 4-6>에서는 피규제집단의 전반적인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나. 규제인식도

<표 4-7>에 피규제집단의 규제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인지 정도, 이해도, 내용의 명확성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규제자체의 인지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자체를 알고있는 대상자는 전체 368명중의 308명인 83.7%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규제위반의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58.4%로 낮게 조사되어 규제인지도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규제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규제이해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308명중 187명인 60.7%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잘 알고있다”와 “말만 들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19.8%와 19.5%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규제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피규제집단 대상자가 소수라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명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해당자 306명 중 82.3%인 25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명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4명으로 17.7%에 불과하였다. 불명확 이유로는 “형식적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체의 39.1%, “검사항목 및 진단항목의 보완 필요하다”가 23.9% 그리고 “검사기관 및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하다”가 13.0%를 각각 차지하였다.

불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들은 현재의 건강진단 항목이나 방법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가시적인 효과만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검사기관 및 항목 등에 관한 추후 보완이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7〉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인지도 (의무규정)	계	368	100.0
	인지	308	83.7
	비인지	60	16.3
인지도 (처벌규정)	계	308	100.0
	인지	180	58.4
	비인지	128	41.6
이해도	계	308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대략 알고 있음	187	60.7
	말만 들었음	60	19.5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매우 명확함	46	15.0
	명확함	206	67.3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매우 명확함	2	0.7
내용불명확 이유 ¹⁾	계	46	100.0
	형식적	18	39.1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11	23.9
	기관,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	6	13.0
	직무/업종별 구분	3	6.5
	정기검진보다 업체사후관리 필요	3	6.5
	홍보부족	2	4.3
	결과미통보	2	4.3
	업체자율시행필요	1	2.2

주: 1)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됨.

다. 규제인정도

<표 4-8>에 피규제집단의 규제인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성, 수준의 적절성, 목적의 부합성 등에 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308명중의 92/8%인 286명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가 7.1%로 나타나 피규제집단 대부분이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 수준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적절하다”가 전체 306명 중 245명인 80.0%를 차지하였으며 “적절하지 않다”가 20.0%로 나타났다. 규제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형식적이다”가 36.1%,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와 “직무 및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가 각각 14.8%로 나타났다.

규제의 목적부합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가 전체 306명 중 245명인 80.0%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0.0%로 밝혀졌다.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목적부합성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피규제집단 대부분의 종사자가 건강진단규제 자체를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조사대상자가 제기한 직무 및 업종별 건강진단규제의 차별화에 관한 논의는 추후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표 4-8〉 피규제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필요성	계	308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별로 필요없음	18	5.8
	전혀 필요없음	4	1.3
수준적절성	계	306	100.0
	매우 적절하다	39	12.7
	대체로 적절함	206	67.3
	별로 적절하지 않음	57	18.6
	전혀 적절하지 않음	4	1.3
부적절사유 ¹⁾	계	61	100.0
	형식적	22	36.1
	직무/업종별 구분	9	14.8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9	14.8
	보건증 등 이중규제 ²⁾	7	11.5
	기관,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6	9.8
	업체자율시행필요	3	4.9
	홍보부족	2	3.3
	업체/종사자 분리관리	2	3.3
	행정서류관리 불편	1	1.6
	목적부합성	계	306
매우 도움이 됨		76	24.8
조금 도움이 됨		169	55.2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전혀 도움이 안됨		5	1.6

주: 1)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됨.

3) 현재는 없어진 중복규제이며 응답내용 그대로 표기함.

라. 규제 준수도

<표 4-9>에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제 규제 준수율, 벌칙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규제의 실제 준수율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308명중의 301명인 97.8%였으며, “잘 지키지 않는다”가 2.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피규제집단의 대부분이 규제를 잘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지키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2.2%의 조사대상자의 미준수 사유를 살펴보면, “바빠서”와 “장기 근속시 불필요하다”가 각각 33.3%를 차지하였다.

규제위반에 관한 벌칙부과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수준 유지”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308명 중 180명인 58.4%로 나타났으며 “강화해야 한다”는 19.2%, “완화해야 한다”는 22.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규제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정도가 현재수준의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9〉 피규제집단 규제준수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준수율 ¹⁾	계	308	100.0
	매우 잘지킴	262	85.1
	대체로 잘 지킴	39	12.7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미준수 이유 ²⁾	계	6	100.0
	장기근속시 불필요	2	33.3
	바빠서	2	33.3
	타부처관련 검진 실시	1	16.7
	입사초기라서 미검진	1	16.7
벌칙부과 적정성	계	308	100.0
	강화	59	19.2
	현재수준유지	180	58.4
	완화	69	22.4

주: 1)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업주 및 종사원이 실제 경험한 규제준수율임.

3) 잘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됨.

2. 規制執行者(公務員) 調査結果

가.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실제 현장에서 관련규제업무를 지도·감시·감독하는 집행공무원의 규제순응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4-10>에는 조사대상 규제집행자의 일반적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10.0%, 경기지역이 8.0%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각 지역별로 고른 의견조사를 하기 위하여 표본 선정을 유의할당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표 4-10> 규제집행자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	100	100.0
서울	10	10.0
부산	6	6.0
대구	5	5.0
인천	5	5.0
광주	5	5.0
대전	6	6.0
울산	5	5.0
경기	8	8.0
강원	7	7.0
충북	7	7.0
충남	6	6.0
전북	6	6.0
전남	6	6.0
경북	7	7.0
경남	7	7.0
제주	4	4.0

나. 규제인식도

<표 4-11>에 집행공무원의 규제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인지 정도, 이해도, 내용의 명확성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규제자체의 인지도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상 제외를 하였고 규제 위반시 처벌규정에 관한 인지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00명 중의 98명인 98.0%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실제 건강진단 의무규제에 관한 이해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100명중의 79.0%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1.0%를 차지하였다.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명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81.0%로 다수였으나 “불명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9.0%나 되었다. 이는 실제 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가 전체의 21.0%라는 결과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규제내용의 불명확 사유를 살펴보면 “형식적이다”와 “검사항목 및 진단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무 및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가 각각 26.3%를 차지하였다.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피규제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건강진단 항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개선이나 보완 등에 관한 추후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4-11> 규제집행자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지도 (처별규정)	계	100	100.0
	인지	98	98.0
	비인지	2	2.0
이해도	계	100	100.0
	잘 알고 있음	79	79.0
	대략 알고 있음	21	21.0
	말만 들었음	-	-
내용명확성	계	100	100.0
	매우 명확함	30	30.0
	명확함	51	51.0
	별로 명확하지 않음	19	19.0
	매우 명확하지 않음	-	-
내용불명확 이유 ¹⁾	계	19	100.0
	형식적	5	26.3
	직무/업종별 구분	5	26.3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5	26.3
	기관,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	2	10.5
	업체자율시행필요	1	5.3
	홍보부족	1	5.3
	결과미통보	-	-
	정기검진보다 업체사후관리 필요	-	-

주: 1)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됨.

다. 규제인정도

<표 4-12>에는 집행공무원의 규제인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성, 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목적의 부합성 등에 관하여 조사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100명중 91.0%인 91명이었고, “필요하지 않다”가 9.0%로 나타나 피규제집단과 마찬가지로 집행공무원 대다수가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규제 수준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적절하다”가 전체 100명 중 78명인 78.0%를 차지하였으며 “적절하지 않다”가 22.0%로 나타났다. 규제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33.3%였고 “형식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3.8%로 나타났다.

규제의 목적부합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가 전체 100명 중 81명인 81.0%로 다수가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체의 1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목적부합성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집행공무원 대부분이 식품영양종사자 정기 건강진단규제 자체의 의미를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다소 형식적이어서 향후 검진 항목을 업종별, 대상자별로 특화하여 내실있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표 4-12〉 규제집행자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필요성	계	100	100.0
	반드시 필요함	59	59.0
	어느 정도 필요함	32	32.0
	별로 필요없음	8	8.0
	전혀 필요없음	1	1.0
수준적절성	계	100	100.0
	매우 적절하다	22	22.0
	대체로 적절함	56	56.0
	별로 적절하지 않음	22	22.0
	전혀 적절하지 않음	-	-
부적절사유 ¹⁾	계	21	100.0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7	33.3
	형식적	5	23.8
	보건증 등 이중규제	4	19.0
	기관,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2	9.5
	업체/종사자 분리관리	2	9.5
	직무/업종별 구분	1	4.8
	업체자율시행필요	-	-
	행정서류관리 불편	-	-
	홍보부족	-	-
목적부합성	계	100	100.0
	매우 도움이 됨	29	29.0
	조금 도움이 됨	52	52.0
	별로 도움이 안됨	16	16.0
	전혀 도움이 안됨	3	3.0

주: 1)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됨.

라. 규제 준수도

<표 4-13>에는 집행공무원의 규제준수도를 파악하기 위한 피규제집단의 규제 준수율 추정 결과와 벌칙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의 실제 준수율에 관한 집행공무원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를 “잘 지킨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100명 중의 83명인 83.0%였으며, “잘 지키지 않는다”가 17.0%로 나타나 집행공무원의 대부분이 피규제집단이 건강진단 규제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17.0%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미준수 사유를 살펴보면 여러 이유 중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와 “장기근속시 불필요하다”가 각각 29.4%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진단규제를 감시·감독하는 집행기관의 집행능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의 집행력으로 적당하다”가 46.0%, “현재의 집행력으로 충분하다”가 16.0%, 그리고 “현재의 집행력으로 부족하다”가 38.0%로 나타나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반국민들도 인력부족에 의한 단속기능 미흡과 그로 인한 형식적인 감시·감독을 우려하고 있음은 동일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식품감시 인력의 전반적인 문제로 향후 식품안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위반에 관한 벌칙부과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수준 유지”가 전체 100명 중 56명인 56.0%를 차지하였으며 “강화해야 한다”는 21.0%, “완화해야 한다”가 23.0%로 나타나 규제위반에 대한 벌칙부과가 현재 수준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피규제집단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13〉 규제집행자 규제준수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준수율 ¹⁾	계	100	100.0
	매우 잘 지키	13	13.0
	대체로 잘 지키	70	70.0
	별로 잘 지키지 않음	17	17.0
	매우 잘 지키지 않음	-	-
미준수 이유 ²⁾	계	17	100.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5	29.4
	장기근속시 잇음	5	29.4
	단속인력부족의 악용	2	11.8
	검진기관 이동 불편	2	11.8
	바빠서	1	5.9
	종사원의 잦은 이직	1	5.9
	홍보부족	1	5.9
	타부처관련 검진 실시	-	-
	입사초기라서 미검진	-	-
행정규제 집행력	계	100	100.0
	현재 집행력으로 충분함	16	16.0
	현재 집행력으로 적당함	46	46.0
	현재 집행력으로 부족함	38	38.0
벌칙부과 적정성	계	100	100.0
	강화	21	21.0
	현재수준유지	56	56.0
	완화	23	23.0

주: 1)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련 업주 및 종사원의 준수율임.

3)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됨.

3. 第3次 集團(一般國民, 消費者) 調査結果

가.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건강진단규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식품안전수준 제고 차원에서 일반국민들을 조사대상자로하여 규제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표 4-14>에는 조사대상 일반국민들의 일반적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2.3%, 경기지역이 20.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각 지역별로 고른 의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층화추출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지역별로 선정하였지만 실제 전화조사상 조사에 응한 비율은 <표 4-14>처럼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전체 대상자 412명 중 205명인 49.8%, 여자가 207명인 50.2%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01명인 24.5%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40대 22.6%, 20대 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제3차 집단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지역	계	412	100.0
	서울	92	22.3
	부산	36	8.7
	대구	22	5.3
	인천	11	2.7
	광주	12	2.9
	대전	13	3.2
	울산	8	1.9
	경기	85	20.6
	강원	13	3.2
	충북	13	3.2
	충남	16	3.9
	전북	16	3.9
	전남	16	3.9
	경북	24	5.8
	경남	31	7.5
제주	4	1.0	
성별	계	412	100.0
	남자	205	49.8
	여자	207	50.2
연령별	계	412	100.0
	20대	81	19.7
	30대	101	24.5
	40대	93	22.6
	50대	59	14.3
	60대 이상	78	18.9

나. 규제인식도

<표 4-15>에 일반국민의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에 관한 규제인식도 파악을 위한 규제 인지도와 이해도에 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정기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에 관한 일반국민의 규제인지도를 조사

해본 결과 규제자체를 알고있는 대상자는 전체 412명중 38.8%인 160명이었으며, 해당업주나 종사원들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 받는 행정 처벌규정에 관한 인지 비율은 전체의 32.5%로 규제자체의 인지도와 더불어 피규제집단이나 집행공무원의 조사결과보다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표 4-7, 표 4-11 참조).

규제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규제이해도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응답자 160명 중 94명인 58.8%가 “말만 들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잘 알고있다”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전체의 3.8%와 37.5%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사료되지만 이 규제가 일반국민의 건강확보와 식품 안전관리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조사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국민들의 인지율도 높은 것이 바람직하겠다.

〈표 4-15〉 제3차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지도 (의무규정)	계	412	100.0
	인지	160	38.8
	비인지	252	61.2
인지도 (처벌규정)	계	160	100.0
	인지	52	32.5
	비인지	108	67.5
이해도	계	160	100.0
	잘 알고 있음	6	3.8
	대략 알고 있음	60	37.5
	말만 들었음	94	58.8

주: 이해도 및 처벌규정 인지도 문항은 인지도(의무규정) 인지대상자만 응답함.

다. 규제인정도

<표 4-16>에는 일반국민의 규제인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필요성, 수준의 적절성, 목적의 부합성 등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해당자 160명 중의 153명인 95.6%였으며, “필요하지 않다”가 4.4%로 나타나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의 조사결과에서 처럼 대부분의 일반국민도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 수준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적절하다”가 조사대상자 160명 중 127명인 79.3%를 차지하였으며 “적절하지 않다”가 20.7%로 나타났다. 규제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형식적이다”가 29.0%,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가 필요하다”가 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목적부합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가 해당자 160명 중 122명인 76.3%로 다수였으며 “도움이 되지않는다”가 23.7%로 나타났다.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목적부합성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일반국민도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의 조사결과처럼 대부분이 종사자 건강진단규제 자체를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6〉 제3차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필요성	계	160	100.0
	반드시 필요함	106	66.3
	어느 정도 필요함	47	29.4
	별로 필요없음	6	3.8
	전혀 필요없음	1	0.6
수준적절성	계	160	100.0
	매우 적절하다	32	20.0
	대체로 적절함	95	59.4
	별로 적절하지 않음	30	18.8
	전혀 적절하지 않음	3	1.9
부적절사유 ¹⁾	계	31	100.0
	기관,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4	12.9
	보건증 등 이중규제	3	9.7
	업체 자율시행 필요	-	-
	행정서류관리 불편	1	3.2
	형식적	9	29.0
	직무/업종별 구분	4	12.9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7	22.6
	홍보부족	2	6.5
	업체/종사자 분리관리	1	3.2
목적부합성	계	160	100.0
	매우 도움이 됨	26	16.3
	조금 도움이 됨	96	60.0
	별로 도움이 안됨	35	21.9
	전혀 도움이 안됨	3	1.9

주: 1)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됨.

라. 규제 준수도

<표 4-17>에는 일반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도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 준수율과 규제 미준수 사유에 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피규제집단의 정기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 준수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규제를 “잘 지킨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총143명중의 65명인 45.5%로 나타났으며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전체의 54.5%로 나타났다. 이는 피규제집단이 응답한 실제 규제준수율 98.8%와 집행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율 83.0%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칫 식품위생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일반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피규제집단의 규제 미준수 이유를 살펴보면 “공무원 단속인력 부족의 악용”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관련업주 및 종사원의 필요성 인지부족”이 20.8%였고, “바빠서”가 18.2% 그리고 “홍보부족”이 15.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낮은 규제순응도 결과에 의해 실제 피규제집단의 규제 순응 정도가 낮으며 형식적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또한 감시·감독 기관의 집행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혀진 조사결과에 관해서는 추후 조사대상자간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7〉 제3차집단 규제 준수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준수율 ¹⁾	계	143	100.0
	매우 잘지킴	8	5.6
	대체로 잘 지킴	57	39.9
	별로 잘 지키지 않음	74	51.7
	매우 잘 지키지 않음	4	2.8
미준수 이유 ²⁾	계	77	100.0
	타부처관련 검진 실시	-	-
	입사초기라서 미검진	-	-
	장기근속시 잇음	1	1.3
	바빠서	14	18.2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6	20.8
	종사원의 잦은 이직	7	9.1
	단속인력부족의 악용	24	31.2
	검진기관 이동 불편	1	1.3
	홍보부족	12	15.6
	검사의 정확성 신뢰성 부족	2	2.6

주: 1)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련 업주 및 종사원의 준수율임.

3) 잘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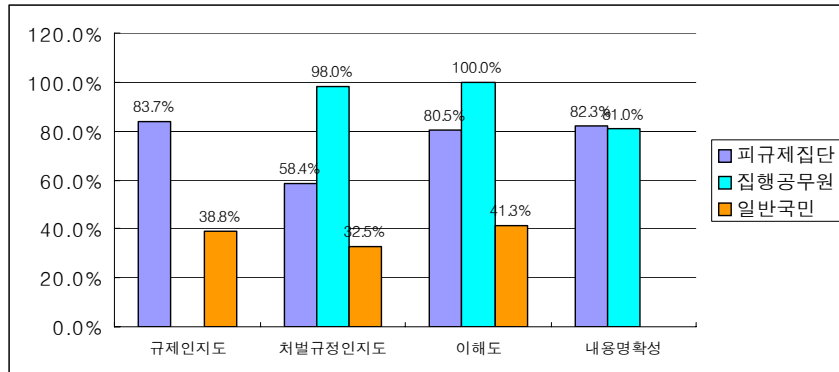
第 4 節 規制順應度 比較分析

1. 規制認識度

[그림 4-2]와 [그림 4-3]에는 피규제집단(업주 및 종사원)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들간에 식품영양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에 관한 규제인식도를 그림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인지도의 경우는 집행공무원이 질문문항에서 제외되었으며 규제의 내용명확성에 관한 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이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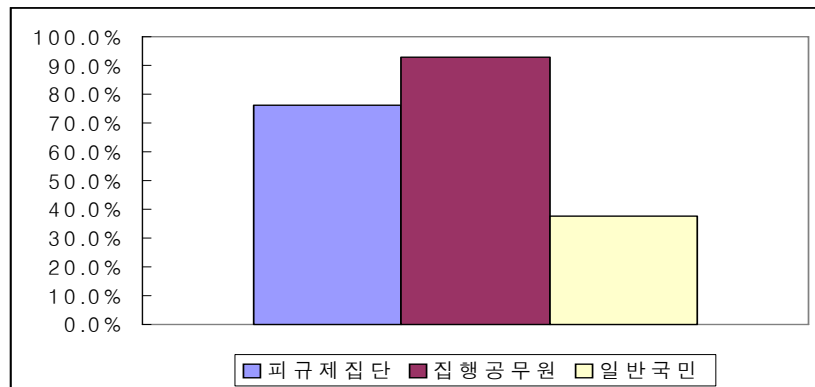
[그림 4-2] 규제인식도 비교



[그림 4-2]는 규제인지도, 처벌규정인지도, 이해도, 규제내용의 명확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각 대상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집행공무원의 규제인식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일반국민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 4-3] 규제인식도 결과분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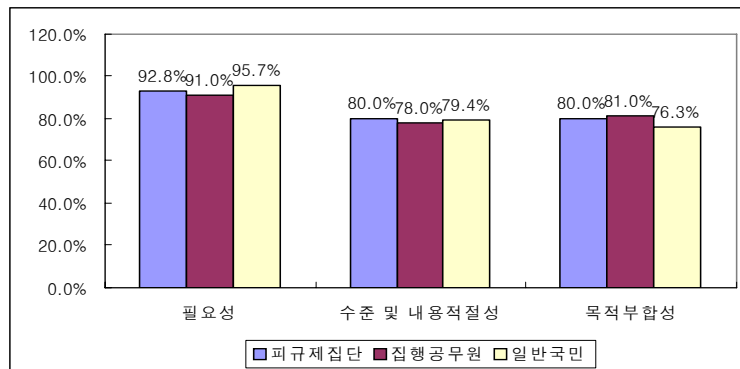
[그림 4-3]에는 각 항목별 규제인식도 조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인식도는 집행공무원, 피규제집단, 일반국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規制認定度

[그림 4-4]와 [그림 4-5]에는 피규제집단(업주 및 종사원)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식품영양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에 관한 규제인정도를 그림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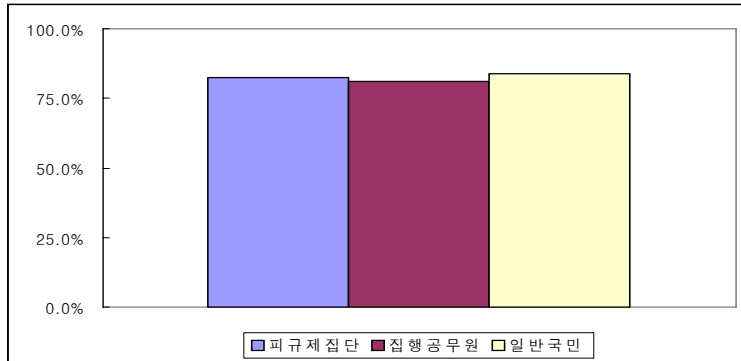
규제인정도에 관한 각문항별 비교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규제 인정도 비교



[그림 4-5]에는 각 항목별 규제인정도를 총괄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인정도는 모든 조사대상자에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순서별로 보면 일반국민,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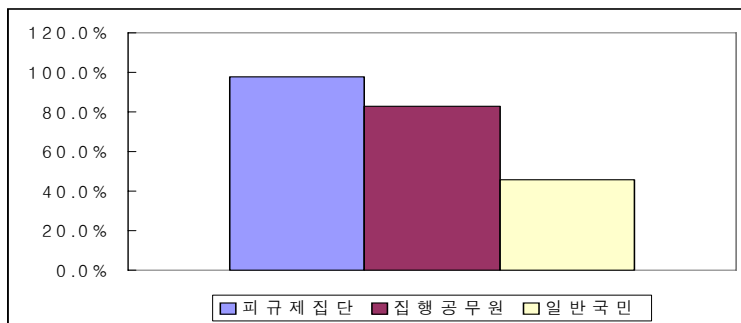
[그림 4-5] 규제 인정도 결과분석 비교



3. 規制遵守度

[그림 4-6]에는 피규제집단(업주 및 종사원)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의 규제준수율에 관하여 그림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4-6]에는 규제준수도 조사항목 중에서 규제집행력과 벌칙부과의 적정성에 관한 결과를 제외한 규제준수율만 제시되었다.

[그림 4-6] 규제 준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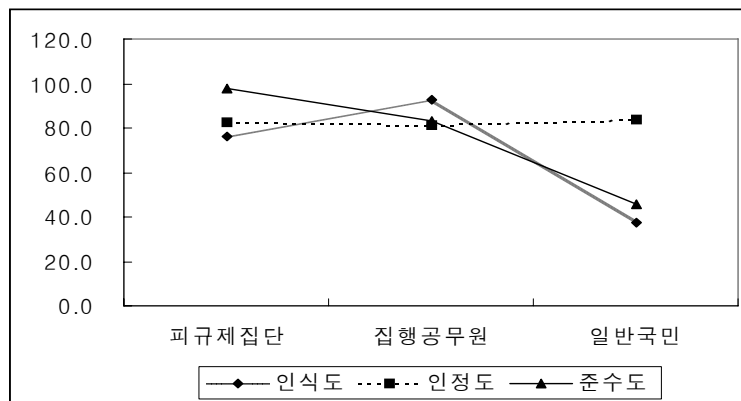


4. 規制順應度

이상의 [그림 4-2]부터 [그림 4-6]까지 규제인식도와 규제인정도 그리고 규제준수도를 일반적인 산출평균으로 비교한 규제순응도의 결과를 [그림 4-7]에 제시되어있다.

여러 조사결과를 살펴 볼 때 피규제집단 즉, 실제 규제대상자들의 규제준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행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피규제 집단의 규제준수율도 일반국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율이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의 조사결과와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국민의 규제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부족한 행정집행력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사료된다.

[그림 4-7] 규제 순응도 비교분석¹²⁾



12) [그림 4-2]부터 [그림 4-6]까지의 규제순응도에 관한 조사결과(인식도, 인정도, 준수도)를 응답대상별로 산출평균을 계산한 것임.

第 5 章 規制順應度 提高方案

규제순응도 제고방안을 규제 인식도, 규제 인정도, 규제 준수도로 나누어 각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規制認識度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피규제집단의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나 실제 현재의 행정집행능력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후 단속관련 업무가 해당지역 민원 및 추후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연관되어있고 단속인력 또한 구조 조정이후 대폭 감원되어 관련 인력의 부족현상을 감안하여 피규제집단의 규제 순응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피규제집단, 일반국민, 그리고 집행공무원들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의식향상이 이루어 질 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규제 순응 제고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規制認定度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피규제 집단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제3차 집단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현 수준의 규제 존치가 필요하다. 다만 현행 규제를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탄력적인 규제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規制遵守度

2002년 7월부터 실시하는 PL법(제조물책임법)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련 업체의 자체 대응 방안 마련으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기보다는 업종별, 업무별 및 현장 종사자 범위 등을 구분하여 검사기간이나 검사항목 등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한다면 규제 준수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집행력이나 법규정의 강화만으로 식품안전과 소비자건강의 보호는 불가능하다. 사전규제적인 법규정의 현실적 강화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사후관리 차원의 홍보 및 교육강화와 국민의식수준 향상 등이 함께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분야는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사전적인 규제 즉, 기준규격이나 항목 등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식품분야의 규제를 타 행정규제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여 완화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식품안전은 보장되기 힘들 것이다.

실제 규제의 대상은 식품이나 음식은 제공하는 관련업체종사자들이나 규제정책의 최종 당사자들은 다수의 국민전체가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OECD의 권고사항처럼 일괄적인 사후규제 강화보다는 사전적 규제의 과학적 접근과 더불어 부족한 행정집행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후관리 대응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감사원·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 체감실태와 개선과제』, 1999.
- 강제상·김종래,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5(2): 90~112. 1996.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 종합지침』, 1998.
- _____,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1999.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영향분석 요령』, 1998.
- _____,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규제개혁 99-5. 1999.
- _____, 『규제개혁백서』, 2000.
- _____, 『규제개혁백서』, 1999.
- _____, 『규제지침서 등』, 2000.
- 규제연구회,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1998.
- 김종래, 「한국의 행정규제에 있어서 순응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수질규제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종석 외,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및 규제개혁의 발전방향』,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1994.
- 김태윤,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기법』, KIPA연구보고서 98-19. 1999.
- _____,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 박경효·정운수·최근희, 「다조직적 구조하에서의 핵심적 집행문제: 국가 GIS정책의 사례」, 『한국행정학보』, 32(2): 1~18. 1998.

- 박호숙, 「정책불응(policy noncompliance)의 요인과 대응전략: 정책집행자의 불응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0(1): 67~86. 2000.
- 사공영호·하혜수·권해수,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1): 43~60. 서울행정학회. 2000.
- 사공영호, 『규제완화 제약요인의 해소방안 모색』, KIPA 연구보고서 97-07. 2000.
- 서울특별시,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2000.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1999~2003.
- 신영권,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대한 규제당사자간의 의식비교」, 『한국정책학회보』, 5(2): 113~135. 1996.
- 이성우, 『민간주도의 경제사회질서 확립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92-07. 1992.
- _____, 「규제개혁 2년의 평가와 과제」, 『1999년도 규제개혁 백서』, 849~857. 규제개혁위원회. 2000.
- 전경련규제개혁팀,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실태와 개선과제』, 2000.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1989.
- 최민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과 공무원: 규제완화와 정책집행의 한계」, 2000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0.
- 최병선, 「규제행정기관과 행태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29(1): 38~6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 최신용, 「정부규제에 대한 과정론적 접근과 통제방안」, 『한국행정연구』 1(2): 47~69. 1992.
- 하병기 외,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 연

- 구보고서 시리즈 99-07. 1999.
- 한국정책학회 내부자료, 『규제순응연구』 .
- 한광석,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총론」, 『규제연구』, 8(특집호). 1999.
- 한국갤럽, 『규제준수율 조사 보고서』, 국무조정실. 1999.
- Anderson, James E., *Public Policy-Making*, 2nd ed.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 Ayres, I. & J. Braithwaite, *Responsive Regulation: Transcending the Deregulation Deb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Braithwaite. John,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OECD Countries", *PUMA Occasional Papers*,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Series No.3, OECD. 1993.
- Coombs, Fred 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in John G. Grumm & Stephen L. Wasby. eds.,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1.
- Hargrove, Erwin C., "The Search for Implementation Theory", In R. J. Zexhauser & D. Leebaert eds. *What Role of Government?*, 280~294. Durham: Duke Press Policy Studies. 1983.
- Mazmanian, Daniel A. & Paul A. Sabatier,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 Glenview, IL: Scott, Foresman. 1983.
- Meier, K. J. & D. R. Morgan, "Citizen Compliance with Public Policy: The National Maximum Speed Law",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5(2): 258~273. 1982.
- OECD, *The Preliminary Report on the State of Regulatory*

- Compliance*(The PUMA Regulatory Quality Review: Review of Japan and Mexico, PUMA/REG(98). 1998.
- _____,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Supporting Materials*, PUMA/REG(99)/ANN. 1999.
- _____, *Draft Report: Innovative Approach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on-European Initiatives*. PUMA/REG(2000)8. 2000.
- Rodger, Harrel R. & Charles S. Bullock, *Coersion to Complianc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9.
- Van Meter, Donald S. & Carl E. Van Hor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dministration and Society* 6: 445~488. 1975.

<http://www.parliament.vic.gov.au/lawreform/re/r/contents.html>.

<http://www.dnr.state.wi.us/org/ca;>

[http://www.dnr.state.wi.us/org/caer/cea/reinvention/green%5Ftier/concept.htm;](http://www.dnr.state.wi.us/org/caer/cea/reinvention/green%5Ftier/concept.htm)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대한민국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dietitian.or.kr>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ia.or.kr> 한국식품공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ekra.or.kr> 한국음식업중앙회

<http://www.ikca.or.kr> 한국조리사회중앙회

附 錄

1. 規制順應度 調査説問紙	103
2. 規制順應 確保戰略	114
3. 行政規制基本法 及 施行令	134
4. 被規制集團 細部 調査結果	166

附錄 1. 規制順應度 調査說問紙

1. 피규제집단(업주 및 종사자) 규제순응도 조사 설문지

규제순응도 조사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의무 규정 - 종사자(피규제집단)

--	--

지역코드

--	--	--	--	--	--

id

조사원코드

날 짜 : 2003년 월 일

전화번호 : ____ - ____ - ____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정부규제 중 하나인 정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관한 관련 업주 및 종사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현실성 없는 규제의 폐지 또는 규제강화 등의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_____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규제를 정비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Q1 지역:

-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SQ2 대상업체:

- ①제조가공업
②식품접객업(휴게음식) ③식품접객업(일반음식)
④식품접객업(단란주점) ⑤식품접객업(유흥주점)

SQ3 조사대상자: ①업주 ②종사자

규제인지도

1-1. ○○님께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건강진단 실시 의무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1-2번 이동) ② 모르고 있다 (→3-1번 이동)

1-2. 그렇다면, ○○님께서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
②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말만 들어본 정도이다.

1-3. ○○님께서, 정기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업주 최대 50만원, 종사원 최대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기건강진단에 관한 실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2.폐결핵 3.전염성 피부질환(한센 병등 세균성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1-4. 그렇다면, ○○님께서서는 이상의 규제내용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명확하다. (→2-1번 이동)
- ② 대체로 명확한 편이다. (→2-1번 이동)
- ③ 별로 명확하지 않다. (→1-4-1번 이동)
- ④ 전혀 명확하지 않다. (→1-4-1번 이동)

1-4-1. 그렇다면, ○○님께서서는 규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규제인정도

2-1. ○○님께서서는 해당 업주나 종사원에게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정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없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 ○○님께서서는 “정기건강진단 실시”규제의 내용이나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2-3번 이동)
- ② 대체로 적절하다 (→2-3번 이동)
- ③ 별로 적절하지 않다 (→2-2-1번 이동)
-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2-1번 이동)

2-2-1. 그렇다면, ○○님께서서는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3. 이 규제는 “종사자 건강확보에 의한 제공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 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본 규제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준수도

3-1. ○○님께서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②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③ 별로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④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3-1-1. 그렇다면, ○○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규제를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3-2. 현재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업주 최대 50만원, 종사원 최대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님께서 현재의 행정처벌수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②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③ 완화해야 한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규제집행자(공무원) 규제순응도 조사 설문지

규제순응도 조사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의무 규정 - 공무원(규제집행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30px; margin: 0 auto;">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50%;"></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30px; margin: 0 auto;"> <tr>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30px; margin: 0 auto;">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50%;"></td> </tr> </table>		
지역코드	id	조사원코드							
날 짜 : 2003년 월 일									
전화번호 : ____ - ____ - ____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정부규제 중 하나인 정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관한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현실성 없는 규제의 폐지 또는 규제강화 등의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_____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규제를 정비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SQ1 지역:**
-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규제인지도

- 1-1. ○○님께서는 식품관련 업주 및 종사원들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
 - ②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말만 들어본 정도이다.

- 1-2. ○○님께서는, 관련업주들이 정기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업주 최대 50만원, 종사원 최대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기건강진단에 관한 실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2.폐결핵 3.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 1-3. 그렇다면, ○○님께서는 이상의 규제내용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명확하다. (→2-1번 이동)
 - ② 대체로 명확한 편이다. (→2-1번 이동)
 - ③ 별로 명확하지 않다. (→1-3-1번 이동)
 - ④ 전혀 명확하지 않다. (→1-3-1번 이동)

1-3-1. 그렇다면, ○○님께서는 규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규제인정도

2-1. ○○님께서는 해당 업주나 종사원에게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정을 정하고, 지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없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 ○○님께서는 “정기건강진단 실시”규제의 내용이나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2-3번 이동)
- ② 대체로 적절하다 (→2-3번 이동)
- ③ 별로 적절하지 않다 (→2-2-1번 이동)
-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2-1번 이동)

2-2-1. 그렇다면, ○○님께서는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3. 이 규제는 “종사자 건강확보를 통한 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본 규제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준수도

3-1. ○○님께서 식품관련 업주 및 종사원들이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따라 정기건강검진 실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②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③ 별로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④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3-1-1. 그렇다면, ○○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관련 업주 및 종사원들이 규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2. ○○님께서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를 관리·감독하는데,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집행력(통제·단속 등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3-3. 현재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업주 최대 50만원, 종사원 최대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님께서 현재의 행정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②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③ 완화해야 한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3. 제3차집단(소비자) 규제순응도 조사 설문지

규제순응도 조사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의무 규정 - 소비자(제3차 집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50%;"></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50%;"></td> </tr> </table>		
지역코드	id	조사원코드							
	날 짜 : 2003년 월 일								
	전화번호 : ____ - ____ - ____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정부규제 중 하나인 식품관련업주 및 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관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현실성 없는 규제의 폐지 또는 규제강화 등의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_____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규제를 정비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Q1 지역: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SQ2 성별: ①남자 ②여자

SQ3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규제인지도

1-1. ○○님께서, 식품관련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1회/1년 정부에서 정기 건강진단실시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1-2번 이동) ② 모르고 있다 (→3-1번 이동)

1-2. 그렇다면, ○○님께서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
②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말만 들어본 정도이다.

1-3. ○○님께서, 해당 업주 및 종사원이 정기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업주 최대 50만원, 종사원 최대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규제인정도

2-1. ○○님께서 식품관련 업주나 종사원에게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정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없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 ○○님께서 “정기건강진단 실시”규제의 내용이나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2-3번 이동)
② 대체로 적절하다 (→2-3번 이동)
③ 별로 적절하지 않다 (→2-2-1번 이동)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2-1번 이동)

2-2-1. 그렇다면, ○○님께서도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3. 이 규제는 “종사자 건강확보에 의한 제공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 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도 본 규제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준수도

3-1. ○○님께서도 식품관련 업주 및 종사원들이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따라 정기건강검진 실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 ②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 ③ 별로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 ④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3-1-1. 그렇다면, ○○님께서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관련 업주 및 종사원들이 규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附錄 2. 規制順應 確保戰略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순차적이란 전체적인 정책과정, 즉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개에 따라 지켜져야 할 원칙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원칙 1 : 규제현장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규제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내용이나 수단을 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현장에 대한 문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순응 지향적 규제개혁은 규제법령에 앞서 문제의 파악과 분석으로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규제설계시에 중요한 규제불응의 내용 및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국가들이 규제의 목표달성에 있어 전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OECD, 1998).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현장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규제대상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 담당실무자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규제현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거의 부재할 뿐더러 그 체계적 조사에 대한 의미나 관심이 빈약하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규제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원칙 1-1 : 규제현장의 문제파악·분석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제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문제를

진단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먼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축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현장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시스템은 규제관련기관간의 정보공동 활용능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추진체계는 규제분야별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단체의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칙 1-2 : 규제대상집단의 특성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는 문제 파악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규제내용이나 수단은 규제대상집단을 동일시하는 전체에서 획일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이는 규제대상집단의 다양한 성격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규제불응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규제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때부터 규제대상집단을 유형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환경규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는 순응능력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순응할 의지나 노력을 상실하게 되며, 그 결과 낮은 순응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규제대상집단을 유형화하고, 이를 규제대안의 선택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판단기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순응에 대한 의지 정도, 순응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능력의 보유, 기술, 지식 및 정보의 수준 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원칙 1-3 : 규제의 문제 확인 및 분석 활동은 지속성을 띠어야 한다.

규제정책의 수행시 그 문제 파악 및 분석은 규제결정단계뿐만 아니라 규제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가 집행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계속적으로 문제확인단계로 돌아가서 규제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규제품질의 개선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 2 : 규제정책의 내용 및 결정과정이 순응친화적이어야 한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정책의 내용과 결정방식에 따라 정책의 집행가능성, 특히 정책순응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그 결정시 규제순응의 문제를 염두에 둘 때 규제목표의 효과적 달성이 가능해진다.

규제순응제고의 관점에서 규제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정책내용 자체의 문제로서 실현가능성, 구체성, 지속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른 하나는 규제결정과정에서부터 정책대상집단이나 규제순응을 촉진할 수 있는 제3자 집단의 참여를 실질화하는 방안의 모색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

은 맥락에서 몇 가지 정책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칙 2-1 : 규제결정이 규제현장의 문제과약을 기초로 행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부처별로 작성한 개혁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심의·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규제현장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규제현장의 문제과약 및 분석활동이 규제개혁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규제현장의 문제과약 노력은 하나의 형식적 활동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규제현장과 규제개혁을 연계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현재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보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시의 평가요소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등 8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추가하여 규제현장의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분석·활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평가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평가요소에 관한 분석이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담당관료의 개인적 판단 및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심의도 관련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규제현장의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및 절차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규제개혁 또는 결정 담당자가 규제현장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규제현장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시민단체나 전문

가 집단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원칙 2-2 : 규제개혁추진기관내에서의 업무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규제개혁추진체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중앙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 규제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심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조직적 집행구조(multi-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structure)에서는 참여기관간의 부적절한 업무분담 및 조정으로 인해 정책이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¹⁾ 같은 맥락에서 규제정책의 경우에도 규제개혁추진기관 사이의 비합리적 업무분담, 의사소통 및 정책조정 결여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김종석 외, 1999:22~27). 아울러 개별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내의 규제정책관련 업무조정 문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일 조직내에서도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들간의 업무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규제의 현장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채 규제결정 및 집행이 비현실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간의 업무공조체제가 잘 구축·운영될 때 규제내용의 일관성 유지가 용이해지고, 부드러운 경쟁을 통해 정책오류의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담당기관간의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흔히 정책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하의상달식(top-down)과 하의상달식(bottom-up) 접근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주로 하의상달식이 선호되는 반면,

1) 다조직적 집행구조의 관점에서 국가GIS정책을 분석한 박경효 외(1998)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난 2년 간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권적 수행체계에 크게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장중심의 규제순응 확보를 위해선 이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시 하부집행기관의 의견과 실정을 토대로 중앙개혁기관이 정책결정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하의상달과 상의하달의 절충적 접근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칙 2-3 : 규제결정시 규제대상집단 및 제3자 집단의 의견수렴을 공식화한다.

규제결정시에 대상집단 및 제3자 집단으로부터 그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것은 향후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규제순응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어,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시에 객관적 자료와 계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8가지 평가요소에 대한 적실성 있는 분석내용을 담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시에 규제대상집단 및 제3자 집단의 의견수렴을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규제심사에 있어서도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고 있으나 규제순응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대상집단이나 규제순응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는 제3자 집단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이들 집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화 노력이 요구된다. 한 방안으로서 현재의 규제 영향분석 평가요소인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이들 집단의 의견수렴 실적을 첨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칙 3 : 규제순응 확보를 위해 순차적 접근전략을 수립·실시한다.

정부의 개입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능률성, 효과성, 정치적 수용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 능률성의 관점에서 정부개입의 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모니터링과 강제를 위하여 상당한 행정자원이 소요되며, 그 효과나 성과 또한 분명치가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부개입의 정도가 약한 정책수단일수록 기업에게는 더 큰 융통성이 부여되므로 능률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정치적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규제수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OECD, 200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의 정부에 의한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은 민간의 규제순응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규제수단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대상집단의 자율규제 능력이나 의지는 선진외국들과는 달리 많이 떨어진다. 이는 일반적 지적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광범위한 규제대안을 적극 활용하는 신축적인 규제순응 확보전략의 설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순차적 접근전략이란 “정부가 행한 규제현장의 문제 파악 및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대상에게 적합한 규제수단을 택한 후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규제수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순응을 위한 순차적 접근전략은 어떤 규제수단이 처음 적용될 때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막상 실제 적용단계에서는 비효과적일 수 있으며, 또한 처음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비효과적인 것으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아울러 규제수단들은 정부개입 및 강제 정도가 약한 수준에서부터 아주 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들을 단계적 또는 병렬적으로 적용한다면 규제현장에 맞는, 그리고 상황적 변화에 따른 규제대응성(regulatory responsiveness)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OECD, 2000).

원칙 3-1 : 규제수단은 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처음의 규제수단은 정부가 규제현장의 실태를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규제대상인 개인이나 기업의 특성, 그들의 규제순응 능력, 개별규제의 성격 등을 토대로 규제대상집단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거기에 알맞은 규제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넓은 의미로 볼 때, 규제수단의 선택 유형은 크게 전통적 정부규제, 규제적 대안 및 비규제적 대안의 세 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²⁾

2) 이러한 규제수단의 세 가지 분류는 김태윤(1999)의 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원칙 3-2 : 가능한 한 규제대상집단에게 규제수단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규제수단의 최종적 선택은 정부 또는 규제대상집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선택한다는 것은 규제현장의 문제분석을 기초로 정부가 단일의 규제수단을 선정하여 규제대상집단에게 제시하는 방안이며, 규제대상집단이 선택한다는 것은 정부가 규제현장의 문제분석을 토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복수의 규제대안을 제시하고 대상집단이 이들 중 자신에게 알맞은 하나를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후자는 기본적으로 전자에 비해 규제수단의 선택방식이 민간위주라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는 규제대상집단의 재량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응의지, 규제순응 개선노력 등을 촉진한다는 상대적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 또는 규제순응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추세가 민간의 자율과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간에게 최종적인 규제수단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양자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 환경, 산업안전 등 규제분야의 특성에 따라 취사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원칙 3-3 : 다양한 규제수단이 순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규제순응 제고를 위해선 특정 수단의 경직적 적용보다는 시간적 차원에서 다양한 수단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다양한 규제수단 중 규제대상집단의 능력이나 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 후 이에 대한 정부의 사후적 평가를 통해 필요할 경우 다른 방식

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규제대안을(자율규제, 자발적 협약, 경제적 유인 등) 시행한 후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규제적 대안(성과기준규제, 과정규제, 사후적 통제 등)을 적용하고, 만약 이 방식도 문제가 있다면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정부규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러한 규제방식의 전환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4 :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규제내용이나 수단, 집행노력 등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규제기반을 조성·강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기반이 미비할 경우 구체적인 정책노력은 실현되는 데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제기반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로서는 규제대상집단 및 집행관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규제순응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3자 집단과의 정책적 공조노력, 그리고 규제정책에 대한 정치적지지 확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원칙 4-1 : 규제대상집단 및 집행관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과 그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것은 전문가나 시민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 이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나 집행관료와 규제대상집단이 규제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예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규제내용을 국민들에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전략은 최근의 고객지향적 행정이란 관점에서 볼 때 소극적이란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집행관료들이 규제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더라도 자기이익적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폐지·개선된 규제내용, 규제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포함하는 독립된 규제개혁사이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개혁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의 적시 제공을 도모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김종석 외, 1999:105).

한편 집행관료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바뀐 규제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규제완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겠다.³⁾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식개혁교육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대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피규제자에 의한 규제집행부서나 관료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지역상공인들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규제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신희권, 1996: 124).

원칙 4-2 : 제3자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규제정책공동체를 형성한다.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 이외에도 규제자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집단들이 존재한다. 즉, 규제 과정에서 규제자를 대신하여 준규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협회,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과 같은 또 다른 집단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활용 예로서는 은행기관이 대출을 할 때 규제대상기업의 환경과 괴행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거나 시민단체가 환경과 괴행위를 한 기업의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의 경우에도 제3자인 외부기관의 보조적인 개입이 있을 때 순기능적이다. 정부가 산업체와 함께 목표와 전략을 협상할 때 외부기관이 이에 함께 참여하여 협상내용과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밝혀주게 되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3자 집단의 활용은 몇 가지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우선 규제기관의 제한된 자원을 생각할 때 이들 집단들의 활용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따른 행정비용을 상당히 절감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제3자 집단은 정부보다 기업 등 규제대상집단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에 대한 민간 부문의 불신이 강한 경우 이들은 규제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중국적으로는 규제순응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체 형태를 통해 보다 직접적인 상호관계 구축에 나서거나 아니면 규제불응관련 사례공개, 제도적인 운영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인 연계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원칙 4-3 : 규제정책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정치사회적 지지를 확보한다.

규제정책이란 그 속성상 대상집단으로부터 거부감을 발생시킬 소지가 많다. 특히 정부의 신뢰성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도 사회로부터 심리적인 저항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규제순응의 확보를 위해선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정책의 취지, 목표, 필요성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지 획득을 위한 노력이 평상시에도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정치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그리고 정당성 없는 규제대상집단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흐름에 무게를 더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규제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정하게 알리고, 그들로부터 협조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칙 5 : 규제정책의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원칙 5-1 : 규제기관의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충을 도모한다.

규제정책의 순응 여부를 감시·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필요자원의 부족은

특히 규제행정업무 수행시 대민서비스의 획일적, 경직적 공급을 가져 온다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⁴⁾ 결국 규제순응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자원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예산의 시대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규제순응의 제고가 가져오는 성과를 이러한 투입비용과 비교한다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규제집행관료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또한 집행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먼저 전문성은 관련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규제정책의 취지, 내용 및 수단에 관한 지식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과 일선의 집행공무원 사이에 정책목표나 내용 등에 관한 이해 정도의 차이로 인해 집행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회의를 품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집행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특히 인사관리적 측면에서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 순환보직의 카테고리화(유사 규제분야간 이동 등), 인센티브시스템을 활용한 적절한 수준의 경쟁 유도, 법규중심의 감사 지양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⁵⁾

4)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에 있어서 공해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등과 같은 시장유인적 정책수단들이 왜곡된 채 성급하게 도입되고 이유를 분석한 최병선(1992)의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환경처가 예산 등의 극심한 제약속에서 환경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위해 각종 부과금 등의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민간은 경제적 부담만 지고 환경오염의 제거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처음부터 시장유인적 수단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5)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피규제자의 이해를 구하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아울러 규제집행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피규제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적 연계나 정치적 영향력 등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수행 현실에 있어서 규제기관, 규제관료 및 대상지역 등에 따른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집행은 비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 결과 규제대상집단의 순응의지가 크게 감퇴하는 양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원칙 5-2 : 규제대상집단의 규제순응능력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한다.

규제대상집단이 규제순응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어떻게 규제에 순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규제혁신 전략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 보조금 지급, 자문제공 등을 통해 규제순응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순응의지가 약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순응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와 기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조사되고 있다. 즉, 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특정한 기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경우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업에 맞는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순응을 위해 각종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 환경청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환경규제준수지원센터를 마련

는 긍정적인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상대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나 실제로는 감사를 의식하여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최민호, 2000:7~8).

하여 중소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한 산업체들에 대하여 규제 준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주 쉽게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대상집단이 규제순응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들을 파악하여 규제개혁에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규제순응과 관련된 민원들이 규제집행기관의 책임자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이에 관한 개선노력을 사후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칙 6 : 규제순응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규제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규제순응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결정 및 집행단계에 다시 환류시키는 순환적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노력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평가가 결여될 경우 규제순응을 위한 지속적 개선노력이 수반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규제순응의 성공 또는 실패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기관 또는 관료들의 노력을 평가하여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열심히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규제대안의 순차적 적용을 위해서도 평가는 필수적이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규제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집행관료의 실적을 평가할 때 규칙순응의 차원

에만 한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합법성 중심의 감독과 통제는 집행관료들로 하여금 더욱더 법규에만 집착하는, 소위 규칙에의 동조 과잉에 따른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 현상을 초래한다. 이럴 경우 관료들의 행위는 보다 형식화되고 무사안일적이며, 복지부동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히 한국행정의 보상체계가 법적 준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최민호, 2000). 따라서 집행관료의 업무를 평가할 때 경직적인 법규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적이며, 만약의 경우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실수가 나타났다면 이를 허용하는 유연한 감사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원칙 6-1 : 지속적으로 규제순응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규제순응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은 순응친화적 규제결정이나 집행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히 규제대상집단의 낮은 순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은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주요한 전략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순응친화적 규제설계 및 집행이 규제현장에서의 모니터링 및 후속 대처방안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분석에 근거한 접근법이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규제자가 불응률이 가장 높은 곳에 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조사시기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규제순응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규제수단과 규제순응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결과 특정한 규제방식이 실패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순응을 회복

하려는 다각적인 수정노력이 요구된다. 즉, 규제대상집단이 처음에 규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즉각 처벌위주의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이나 교육을 통해 규제순응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규제순응 회복노력의 실패시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엄정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 6-2 : 규제순응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한다.

규제순응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규제순응률이란 차원을 넘어서 그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인 규제정책의 목표달성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앞에서 지적한 소위 실용적, 총체적 및 성과지향적 규제순응전략이 지향하는 근본적 취지이기도 하다(Parker, 1999). 예를 들어, 규제내용이 잘못된 경우 높은 규제순응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규제목표의 달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규제집행 및 순응을 위한 비용만을 부담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규제목표의 달성이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규제순응의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규제순응의 효과분석 결과를 규제영향분석, 나아가서는 규제기획기능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규제영향분석의 경우에는 규제의 강화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규제가 과연 규제순응을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규제목표의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초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기획기능과도 네트워크

크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기획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규제기획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규제기획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며,⁶⁾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규제순응의 평가결과를 본 제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칙 6-3 : 규제순응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규제순응의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규제순응 평가지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규제순응 과정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규제순응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과정평가란 규제순응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서 규제순응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구체적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과평가란 규제순응 집행노력에 따른 규제순응률의 향상 여부와 이로 인한 규제개혁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규제순응률은 직접적이고도 유형적인 산출(output)의 개념이며, 규제개혁의 결과란 산출에 의해 나타나는 보다 포괄적인 성과(outcome)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규제순응의 산출과 성과를 측

6) 규제기획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유용성 및 한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김종석 외(1999:178~186)를 참조하기 바란다.

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들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결국 규제순응 노력이 규칙순응(rule compliance)의 범위를 뛰어 넘어 규제정책 목표의 실질적 달성(substantive compliance)에 그 기본적 취지가 있다고 할 때 매우 중요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그것이 다시 규제결정 및 집행과정에 활용될 때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附錄 3. 行政規制基本法 및 施行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법정주의)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규제의 원칙)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1년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1조 (예비심사)

-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

-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

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개선권고)

- ①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 (의견제출)

-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직정비등)

-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구성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 (전문위원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등)

-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 (규제개선 점검·평가)

-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 (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지원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37조 (공무원의 책임등)

-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고시등의 재검토)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레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레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681호, 1998.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나. 규제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여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

여 서면·모사전송·컴퓨터통신·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실지조사)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

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외의 점검·평가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附錄 4. 被規制集團 細部 調査結果

1. 規制認識度

〈부표 4-1〉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대상별)

(단위: 명, %)

구분		총계		업주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지도 (의무규정)	계	368	100.0	143	100.0	225	100.0
	인지	308	83.7	131	91.6	177	78.7
	비인지	60	16.3	12	9.3	48	21.3
인지도 (처벌규정)	계	308	100.0	131	100.0	177	100.0
	인지	180	58.4	86	65.6	94	53.1
	비인지	128	41.6	45	34.4	83	46.9
이해도	계	308	100.0	131	100.0	177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39	29.8	22	12.4
	대략 알고 있음	187	60.7	76	58.0	111	62.7
	말만 들었음	60	19.5	16	12.2	44	24.9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131	100.0	175	100.0
	매우 명확함	46	15.0	24	18.3	22	12.6
	명확함	206	67.3	86	65.6	120	68.6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19	14.5	33	18.9
	매우 명확함	2	0.7	2	1.5	-	-
내용불명확 이유 ¹⁾	계	46	100.0	20	100.0	26	100.0
	기관,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	6	13.0	5	25.0	1	3.8
	직무/업종별 구분	3	6.5	2	10.0	1	3.8
	업체자율시행필요	1	2.2	1	5.0	-	-
	홍보부족	2	4.3	2	10.0	-	-
	형식적	18	39.1	7	35.0	11	42.3
	결과미통보	2	4.3	-	-	2	7.7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11	23.9	2	10.0	9	34.6
	정기검진보다 업체사후관리 필요	3	6.5	1	5.0	2	7.7

주: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

〈부표 4-2〉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업종별)

(단위: 명, %)

구분		총계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지도 (의무규정)	계	368	100.0	289	100.0	79	100.0
	인지	308	83.7	242	83.7	66	83.5
	비인지	60	16.3	47	16.3	13	16.5
인지도 (처벌규정)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인지	180	58.4	138	57.0	42	63.6
	비인지	128	41.6	104	43.0	24	36.4
이해도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55	22.7	6	9.1
	대략 알고 있음	187	60.7	146	60.3	41	62.1
	말만 들었음	60	19.5	41	16.9	19	28.8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매우 명확함	46	15.0	38	15.8	8	12.1
	명확함	206	67.3	160	66.7	46	69.7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42	17.5	10	15.2
	매우 명확함	2	0.7	-	-	2	3.0
내용불명확 이유 ¹⁾	계	46	100.0	34	100.0	12	100.0
	기관,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	6	13.0	5	14.7	1	8.3
	직무/업종별 구분	3	6.5	2	5.9	1	8.3
	업체자율시행필요	1	2.2	1	2.9	-	-
	홍보부족	2	4.3	2	5.9	-	-
	형식적	18	39.1	11	32.4	7	58.3
	결과미통보	2	4.3	2	5.9	-	-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11	23.9	9	26.5	2	16.7
	정기검진보다 업체사후관리 필요	3	6.5	2	5.9	1	8.3

주: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

〈부표 4-3〉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세부업종별)

(단위: 명, %)

구분	총계		제조가공		식품접객										
					소계		휴게		일반		단란		유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지도 (의무규정)	계	368	100.0	289	100.0	79	100.0	20	100.0	20	100.0	19	100.0	20	100.0
	인지	308	83.7	242	83.7	66	83.5	17	85.0	19	95.0	13	68.4	17	85.0
	비인지	60	16.3	47	16.3	13	16.5	3	15.0	1	5.0	6	31.6	3	15.0
인지도 (처벌규정)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인지	180	58.4	138	57.0	42	63.6	13	76.4	11	57.9	8	61.5	10	58.8
	비인지	128	41.6	104	43.0	24	36.4	4	23.5	8	42.1	5	38.5	7	41.2
이해도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55	22.7	6	9.1	-	-	4	21.1	1	7.7	1	5.9
	대략 알고 있음	187	60.7	146	60.3	41	62.1	13	76.5	12	63.2	8	61.5	8	47.1
	말만 들었음	60	19.5	41	16.9	19	28.8	4	23.5	3	15.8	4	30.8	8	47.1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매우 명확함	46	15.0	38	15.8	8	12.1	1	5.9	2	10.5	3	23.1	2	11.8
	명확함	206	67.3	160	66.7	46	69.7	11	64.7	14	73.7	9	69.2	12	70.6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42	17.5	10	15.2	3	17.6	3	15.8	1	7.7	3	17.6
	매우 명확함	2	0.7	-	-	2	3.0	2	11.8	-	-	-	-	-	-
내용불명확 이유 ¹⁾	계	46	100.0	34	100.0	12	100.0	5	100.0	3	100.0	1	100.0	3	100.0
	기관,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	6	13.0	5	14.7	1	8.3	1	20.0	-	-	-	-	-	-
	직무/업종별 구분	3	6.5	2	5.9	1	8.3	-	-	1	33.3	-	-	-	-
	업체자율시행필요	1	2.2	1	2.9	-	-	-	-	-	-	-	-	-	-
	홍보부족	2	4.3	2	5.9	-	-	-	-	-	-	-	-	-	-
	형식적	18	39.1	11	32.4	7	58.3	3	60.0	1	33.3	1	100.0	2	66.7
	결과미통보	2	4.3	2	5.9	-	-	-	-	-	-	-	-	-	-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11	23.9	9	26.5	2	16.7	1	20.0	-	-	-	-	1	33.3
	정기검진보다 업체사후관리 필요	3	6.5	2	5.9	1	8.3	-	-	1	33.3	-	-	-	-

주: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하였으며,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

2. 規制認定度

〈부표 4-4〉 피규제집단의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총계		업주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성	계	308	100.0	131	100.0	177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72	55.0	107	60.5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43	32.8	64	36.2
	별로 필요없음	18	5.8	12	9.2	6	3.4
	전혀 필요없음	4	1.3	4	3.1	-	-
수준적절성	계	306	100.0	130	100.0	176	100.0
	매우 적절하다	39	12.7	14	10.8	25	14.2
	대체로 적절함	206	67.3	82	63.1	124	70.5
	별로 적절하지 않음	57	18.6	31	23.8	26	14.8
	전혀 적절하지 않음	4	1.3	3	2.3	1	0.6
부적절사유 ¹⁾	계	61	100.0	34	100.0	27	100.0
	기관,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6	9.8	4	11.8	2	7.4
	보건증 등 이중규제	7	11.5	6	17.6	1	3.7
	업체자율시행필요	3	4.9	3	8.8	-	-
	행정서류관리 불편	1	1.6	1	2.9	-	-
	형식적	22	36.1	7	20.6	15	55.6
	직무/업종별 구분	9	14.8	6	17.6	3	11.1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9	14.8	5	14.7	4	14.8
	홍보부족	2	3.3	1	2.9	1	3.7
	업체/종사자 분리관리	2	3.3	1	2.9	1	3.7
목적부합성	계	306	100.0	131	100.0	175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26	19.8	50	28.6
	조금 도움이 됨	169	55.2	72	55.0	97	55.4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32	24.4	24	13.7
	전혀 도움이 안됨	5	1.6	1	0.8	4	2.3

주: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

〈부표 4-5〉 피규제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업종별)

(단위: 명, %)

구분		총계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성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147	60.7	32	48.5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81	33.5	26	39.4	
	별로 필요없음	18	5.8	13	5.4	5	7.6	
	전혀 필요없음	4	1.3	1	0.4	3	4.5	
수준적절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매우 적절하다	39	12.7	31	12.9	8	12.1	
	대체로 적절함	206	67.3	165	68.8	41	62.1	
	별로 적절하지 않음	57	18.6	42	17.5	15	22.7	
	전혀 적절하지 않음	4	1.3	2	0.8	2	3.0	
부적절사유 ¹⁾	계	61	100.0	44	100.0	17	100.0	
	기관,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6	9.8	3	6.8	3	17.6	
	보건증 등 이중규제	7	11.5	7	15.9	-	-	
	업체자율시행필요	3	4.9	2	4.5	1	5.9	
	행정서류관리 불편	1	1.6	1	2.3	-	-	
	형식적	22	36.1	16	36.4	6	35.3	
	직무/업종별 구분	9	14.8	5	11.4	4	23.5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9	14.8	7	15.9	2	11.8	
	홍보부족	2	3.3	2	4.5	-	-	
	업체/종사자 분리관리	2	3.3	1	2.3	1	5.9	
	목적부합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60	25.0	16	24.2
조금 도움이 됨		169	55.2	141	58.8	28	42.4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37	15.4	19	28.8	
전혀 도움이 안됨		5	1.6	2	0.8	3	4.5	

주: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

〈부표 4-6〉 피규제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세부업종별)

(단위: 명, %)

구분	총계		제조가공		식품접객											
					소계		휴게		일반		단란		유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성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147	60.7	32	48.5	7	41.2	10	52.6	6	46.2	9	52.9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81	33.5	26	39.4	6	35.3	7	36.8	5	38.5	8	47.1	
	별로 필요없음	18	5.8	13	5.4	5	7.6	2	11.8	2	10.5	1	7.7	-	-	
	전혀 필요없음	4	1.3	1	0.4	3	4.5	2	11.8	-	-	1	7.7	-	-	
수준적절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매우 적절하다	39	12.7	31	12.9	8	12.1	1	5.9	2	10.5	5	38.5	-	-	
	대체로 적절함	206	67.3	165	68.8	41	62.1	10	58.8	12	63.2	5	38.5	14	82.4	
	별로 적절하지 않음	57	18.6	42	17.5	15	22.7	4	23.5	5	26.3	3	23.1	3	17.6	
	전혀 적절하지 않음	4	1.3	2	0.8	2	3.0	2	11.8	-	-	-	-	-	-	
부적절사유 ¹⁾	계	61	100.0	44	100.0	17	100.0	6	100.0	5	100.0	3	100.0	3	100.0	
	기관,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6	9.8	3	6.8	3	17.6	1	16.7	1	20.0	-	-	1	33.3	
	보건증 등 이중규제	7	11.5	7	15.9	-	-	-	-	-	-	-	-	-	-	
	업체자율시행필요	3	4.9	2	4.5	1	5.9	-	-	-	-	1	33.3	-	-	
	행정서류관리 불편	1	1.6	1	2.3	-	-	-	-	-	-	-	-	-	-	
	형식적	22	36.1	16	36.4	6	35.3	1	16.7	3	60.0	1	33.3	1	33.3	
	직무/업종별 구분	9	14.8	5	11.4	4	23.5	3	50.0	1	20.0	-	-	-	-	
	검사 및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9	14.8	7	15.9	2	11.8	1	16.7	-	-	-	-	1	33.3	
	홍보부족	2	3.3	2	4.5	-	-	-	-	-	-	-	-	-	-	
	업체/종사자분리관리	2	3.3	1	2.3	1	5.9	-	-	-	-	1	33.3	-	-	
	목적부합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60	25.0	16	24.2	2	11.8	6	31.6	4	30.8	4	23.5
		조금 도움이 됨	169	55.2	141	58.8	28	42.4	10	58.8	7	36.8	5	38.5	6	35.3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37	15.4	19	28.8	5	29.4	5	26.3	3	23.1	6	35.3	
전혀 도움이 안됨		5	1.6	2	0.8	3	4.5	-	-	1	5.3	1	7.7	1	5.9	

주: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

3. 規制遵守度

〈부표 4-7〉 피규제집단 규제 준수율 조사결과(대상별)

(단위: 명, %)

구분	총계		업주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준수율 ¹⁾	계	308	100.0	131	100.0	177	100.0
	매우 잘 지킴	262	85.1	115	87.8	147	83.1
	대체로 잘 지킴	39	12.7	15	11.5	24	13.6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1	0.8	5	2.8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	-	1	0.6
미준수 이유 ²⁾	계	6	100.0	1	100.0	5	100.0
	타부처관련 검진 실시	1	16.7	1	100.0	-	-
	입사초기라서 미검진	1	16.7	-	-	1	20.0
	장기근속시 불필요	2	33.3	-	-	2	40.0
	바빠서	2	33.3	-	-	2	40.0
벌칙부과 적정성	계	308	100.0	131	100.0	177	100.0
	강화	59	19.2	26	19.8	33	18.6
	현재수준유지	180	58.4	70	53.4	110	62.1
	완화	69	22.4	35	26.7	34	19.2

주: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 1) 업주 및 종사원이 실제 경험한 규제준수율임.
- 2)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

〈부표 4-8〉 피규제집단 규제준수율 조사결과(업종별)

(단위: 명, %)

구분		총계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준수율 ¹⁾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매우 잘 지키	262	85.1	214	88.4	48	72.7
	대체로 잘 지키	39	12.7	25	10.3	14	21.2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2	0.8	4	6.1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1	0.4	-	-
미준수 이유 ²⁾	계	6	100.0	2	100.0	4	100.0
	타부처관련 검진 실시	1	16.7	1	50.0	-	-
	입사초기라서 미검진	1	16.7	-	-	1	25.0
	장기근속시 불필요	2	33.3	1	50.0	1	25.0
	바빠서	2	33.3	-	-	2	50.0
벌칙부과 적정성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강화	59	19.2	54	22.3	5	7.6
	현재수준유지	180	58.4	140	57.9	40	60.6
	완화	69	22.4	48	19.8	21	31.8

주: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 1) 업주 및 종사원이 실제 경험한 규제준수율임.
- 2)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

〈부표 4-9〉 피규제집단 규제준수율 조사결과(세부업종별)

(단위: 명, %)

구분	총계		제조 가공		식품집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계		휴게		일반		단란		유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준수율 ¹⁾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매우 잘 지키킴	262	85.1	214	88.4	48	72.7	13	76.5	14	73.7	11	84.6	10	58.8
	대체로 잘 지키킴	39	12.7	25	10.3	14	21.2	4	23.5	4	21.1	1	7.7	5	29.4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2	0.8	4	6.1	-	-	1	5.3	1	7.7	2	11.8
미준수 이유 ²⁾	계	6	100.0	2	100.0	4	100.0	-	-	1	100.0	1	100.0	2	100.0
	타부처관련 검진실시	1	16.7	1	50.0	-	-	-	-	-	-	-	-	-	-
	입사초기라서 미검진	1	16.7	-	-	1	25.0	-	-	1	100.0	-	-	1	50.0
	장기근속시 불필요	2	33.3	1	50.0	1	25.0	-	-	-	-	1	100.0	1	50.0
	바빠서	2	33.3	-	-	2	50.0	-	-	-	-	-	-	-	-
벌칙부과 적정성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강화	59	19.2	54	22.3	5	7.6	-	-	-	-	2	15.4	3	17.6
	현재수준유지	180	58.4	140	57.9	40	60.6	11	64.7	12	63.2	6	46.2	11	64.7
	완화	69	22.4	48	19.8	21	31.8	6	35.3	7	36.8	5	38.5	3	17.6

주: 무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 1) 업주 및 종사원이 실제 경험한 규제준수율임.
- 2)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만 해당.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전화: 02) 380-8000

FAX: 02) 352-9129, 2181